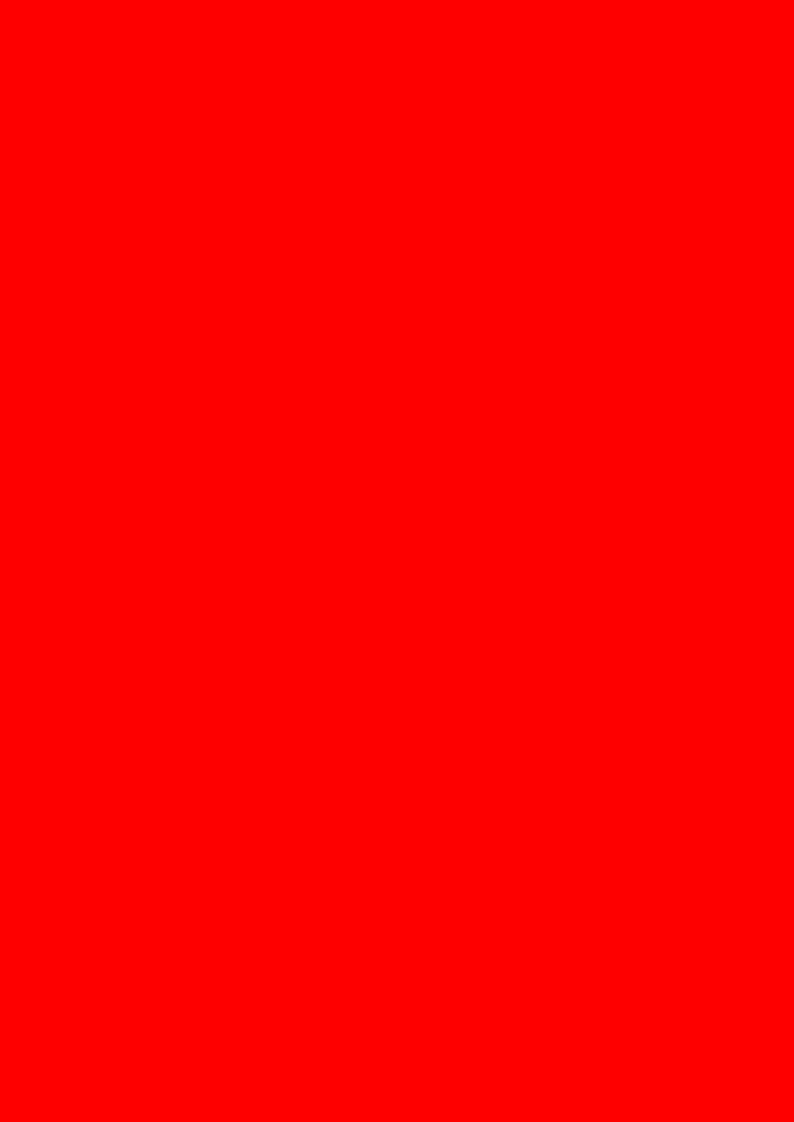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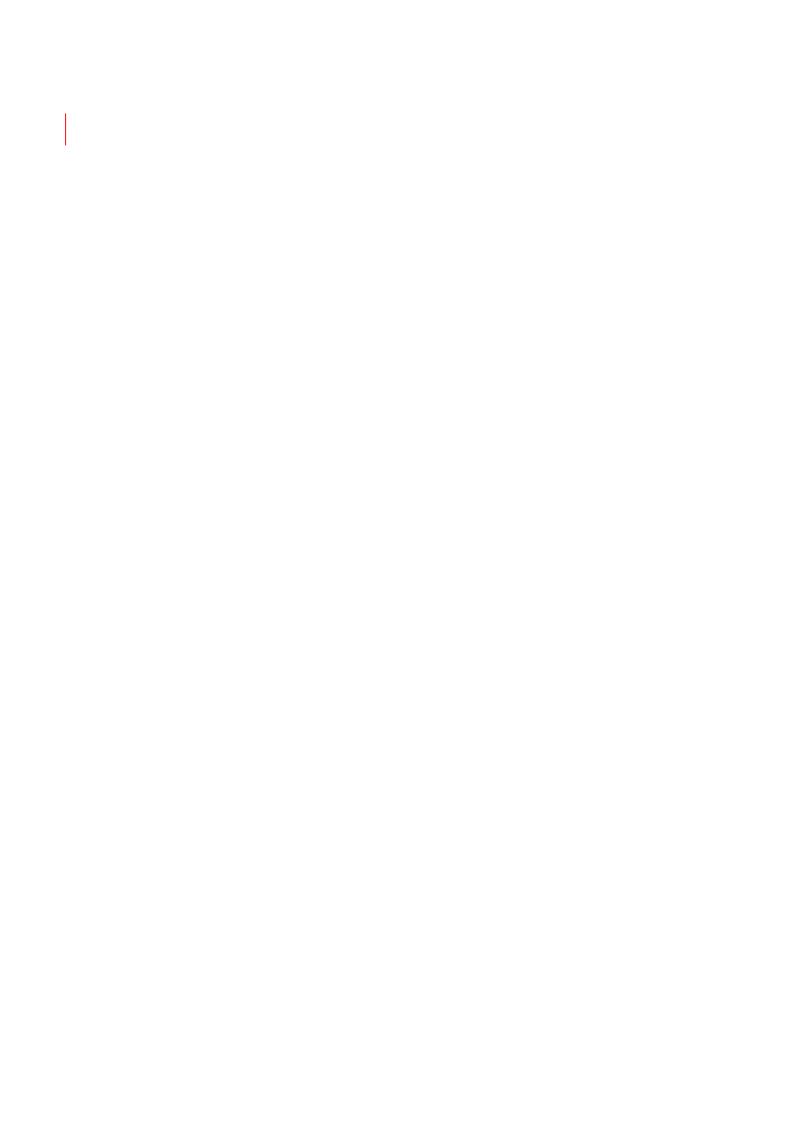
Blue	관심
Yellow	주의
Orange	경계
Red	심각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5764호)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상황을 상정하고 위기대응을 위한 절차·기준·요령과 각종 양식, 보도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방사선비상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단계로 돌입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비상대응조치를 수행한다.



기관대응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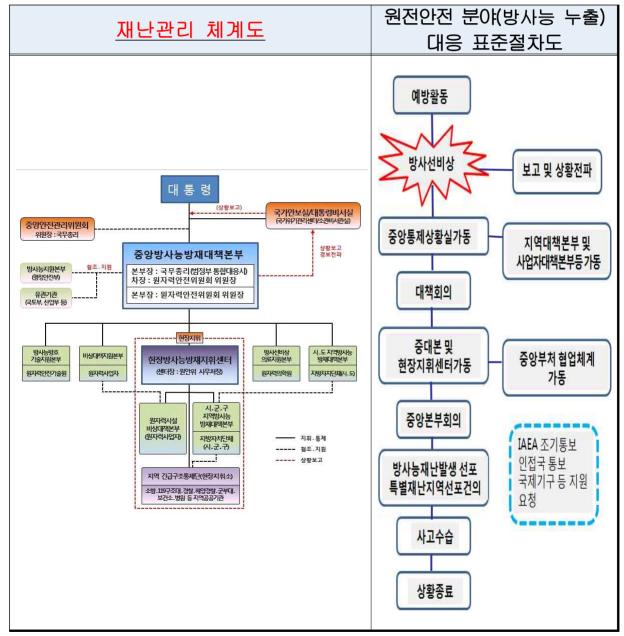


유형 : 원전안전

주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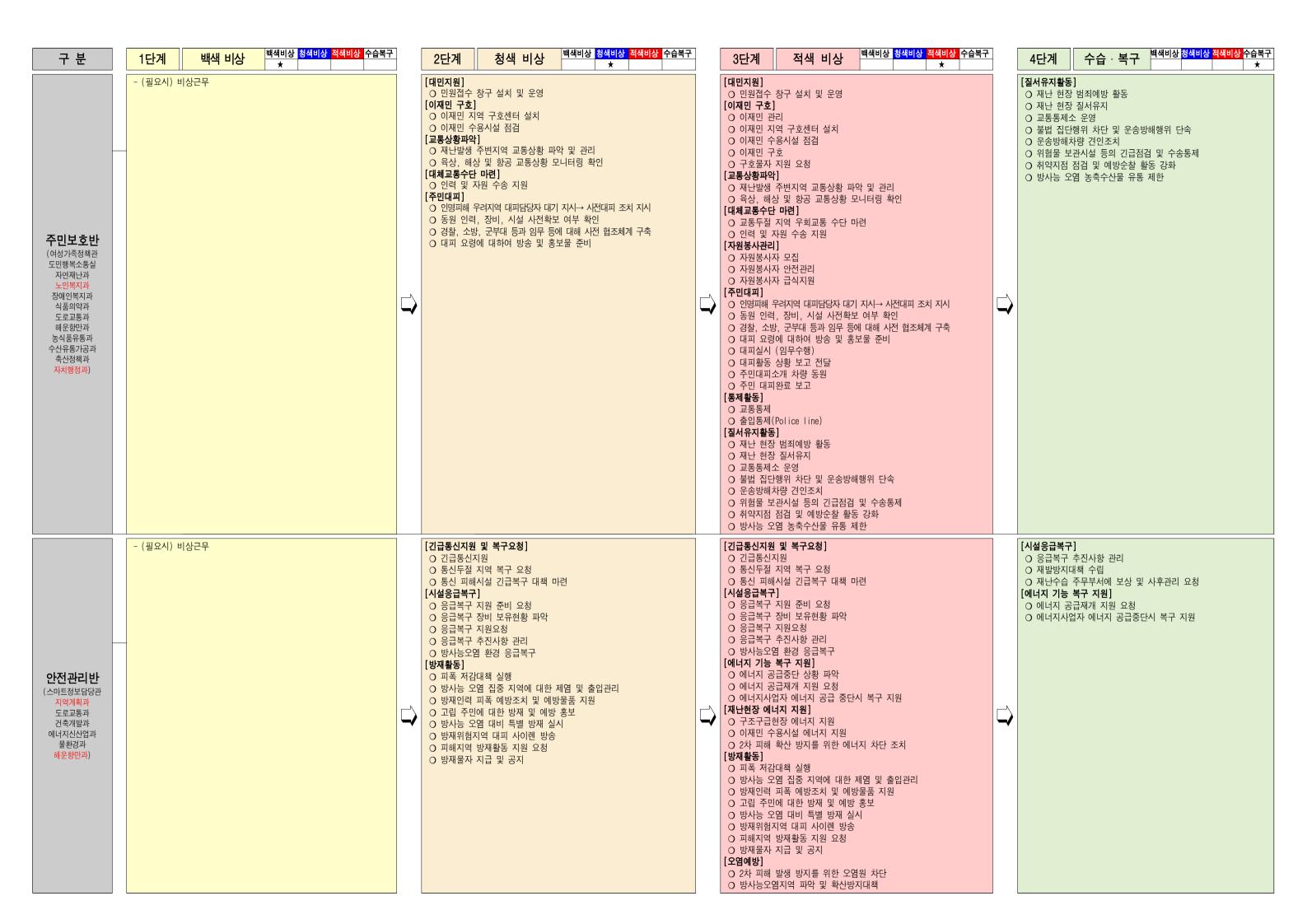
관련 매뉴얼 ○ 「원전안전분이(방사능누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워자력안전위원회 ○「원전안전 분야」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 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 찰청, 소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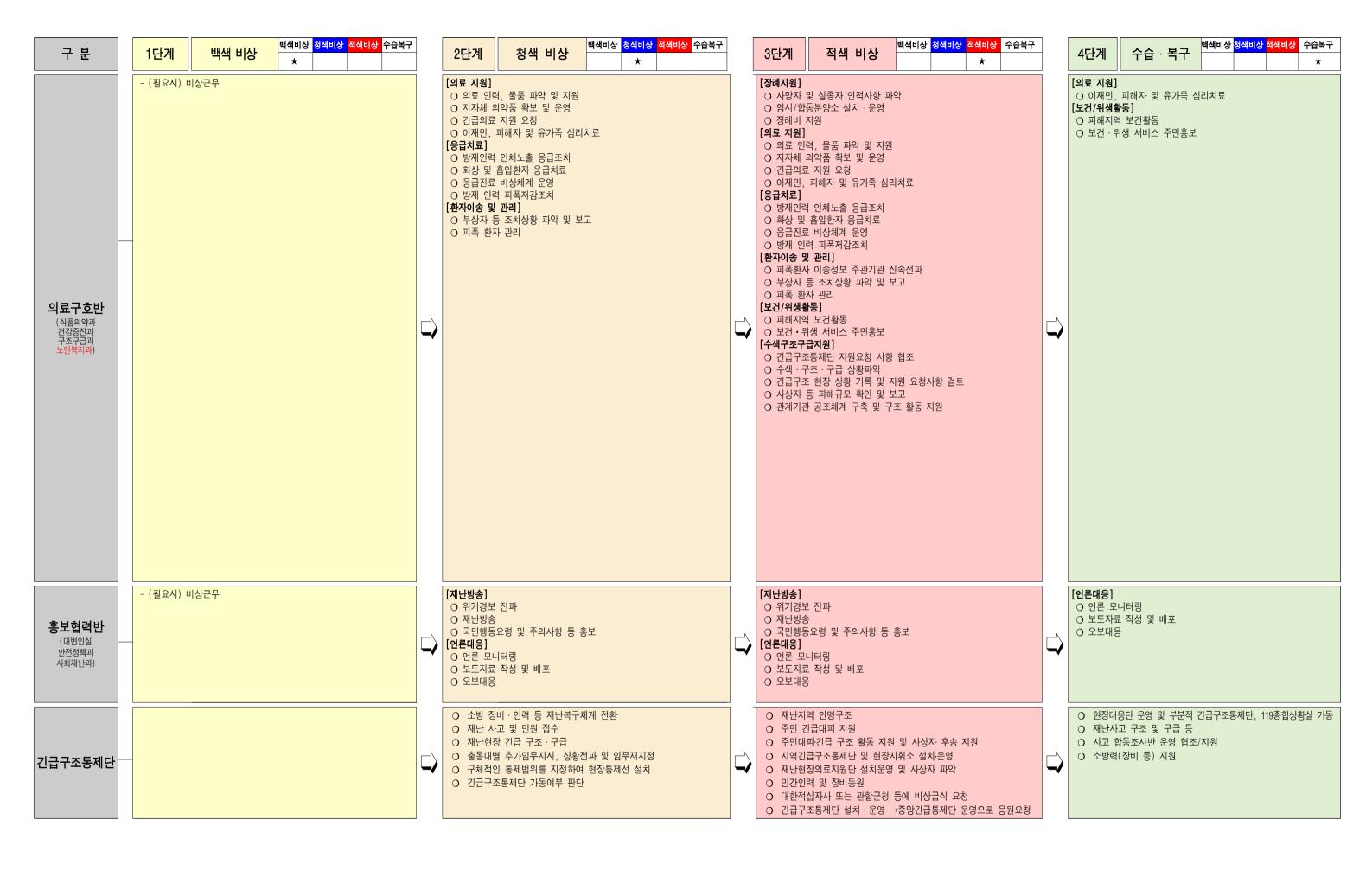
I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제1항·제3항·제4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5조제1항 및 제26조

전라남도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재난대응 프로세스 백색비상 <mark>청색비상 적색비상</mark> 수습복구 백색비상 <mark>청색비상 적색비상</mark> 수습복구 백색비상 <mark>청색비상 적색비상 </mark>수습복구 구 분 청색 비상 수습 · 복구 1단계 백색 비상 2단계 3단계 적색 비상 4단계 * [백색 비상 상황접수 및 파악] O 상황 접수 O 상황 파악 - 시간 장소 원인 현장조치 사고확대가능성 O 상황보고 - 사회재난과장, 도민안전실장, 행정부지사, 도지사 O 상황 전파 - 지자체(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재 [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 난 기 O 긴급 현장지원 요청 종 O 현장대처 상황파악 대 호 O 긴급구조구급 협조 및 지원사항 파악 응 합 재 O 초기대응팀 가동 상 난 [초기대응팀 및 재난종합상황실 가동] 황 과 O 현장 피해 및 대처상황 파악 O 상황보고서 작성 및 전파 실 O 재난상황 수시보고 및 전파공유 O 상황판단회의 개최 O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 요청 O 관계기관 대책회의 준비 및 개최 O 재난상황 단계별 상황실 탄력운영 O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 O 지대본 가동 준비 [초동지시] [전라남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휘] [전라남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휘] [사고수습활동 지휘:점검] 부 O 초기상황 파악 및 현장 조치사항 지시 O 전라남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휘 O 전라남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휘 O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재정적 지원 검토 지시 재 O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생활안전 조치 지시 O 현장대응요원 즉시 현장출동 지시 O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을 위한 특별지시 O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을 위한 특별지시 O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O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회의 주재 O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회의 주재 O 특별교부금 지원 건의 검토 - 재난 상황 파악(재산피해, 인명피해 여부 등) - 재난 상황 파악(재산피해, 인명피해 여부 등) - 인명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 방안 ○ 피해현장 방문 및 주요인사 현장방문 수행 지 - 사상자 지원대책 마련 - 사상자 지원대책 마련 O 사망·실종자 유족보조 조치 지시(장의비, 위로금 지급 등) - 이재민 구호소운영 - 이재민 구호소운영 O 피해원인 분석 및 향후 종합대책 마련 지시 O 군 병력, 특수기동대 등 추가 진화인력 투입 여부 판단 O 군 병력, 특수기동대 등 추가 진화인력 투입 여부 판단 지 O 범정부적 지원(인력, 장비)사항 요청 O 범정부적 지원(인력, 장비)사항 요청 사 [전라남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비상대응 준비] [전라남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수습·복구 지원] O 상황실 및 사회재난과 대응태세 확립 O 도지사(부지사) 보좌 O 도지사(부지사) 보좌 O 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 O 피해현황 조사 및 긴급대응·복구 조치 O 재난피해 상황 파악 및 복구체계 가동 O 재난피해 상황 파악 및 복구체계 가동 O 이재민 구호대책 등 점검·지원 O 상황 및 조치사항 보고 O 비상대응단계 상향조정 필요성 판단 보고 O 상황 및 조치사항 보고 O 부족자원 등 파악·지원 도민안전실장 O 지대본 운영 필요사항 확인 O 지대본 조치내용 및 지원 필요사항 확인 O 지대본 조치내용 및 지원 필요사항 확인 O 신속한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지원 - 설치장소, 근무반별 임무, 근무인원 등 O 피해자 지원 및 복구범위 검토/보고 O 피해자 지원 및 복구범위 검토/보고 O 사고대응 문제점 분석 및 대책 강구 O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재난대응상황 브리핑 O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재난대응상황 브리핑 - (필요시) 비상근무 [청색 비상 상황접수 및 파악] [적색 비상 상황접수 및 파악] [재난 및 사고 복구] O 상황 접수 O 상황 접수 ○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O 상황 파악 ○ 상황 파악 O 주민복귀 결정사항 이행 O 상황보고 O 상황보고 ○ 재난피해 재발방지대책 강구 종합조정반 O 상황 전파 O 상황 전파 (안전정책과 **─**✔ [전라남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 [전라남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사회재난과 O 지대본 설치 및 가동 O 지대본 설치 및 가동 자연재난과) O 지대본 실무반 편성 O 지대본 실무반 편성 O 지대본 운영 및 지원 O 지대본 운영 및 지원 [방재자원 확보 및 수요파악] [방재자원 확보 및 수요파악] [이재민 경제적 지원] - (필요시) 비상근무 O 방재자원 확보 현황 파악 O 방재자원 확보 현황 파악 O 재해구호예산 및 지원금 투입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 예산 및 지원금 확보 운영지원반 O 유관단체 인력 동원 O 유관단체 인력 동원 O 특별교부세 지원사항 파악 (사회재난과 O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력, 자재 동원 O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력, 자재 동원 ○ 저소득층 지원 ○ 군 인력, 장비 동원을 위한 군부대 지원 요청 O 군 인력, 장비 동원을 위한 군부대 지원 요청 O 의료비 지원 예산담당관) ○ 방재자원 동원 자료 관리 O 방재자원 동원 자료 관리 [피해보상 및 지원] O 응급복구 수습 예산 지원 O 응급복구 수습 예산 지원 O 피해보상 접수 O 피해보상 지원





구 분	1단계 백색 비상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 수습복구	2단계 청색 비상 백색비상 <mark>청색비상 적색비상 수습복구</mark> ★	3단계 적색 비상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 수습복구	4단계 수습·복구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 수습복구 ★
전라남도교육청		O 이재민 수용 대비 학교시설 점검	○ 학교 휴교조치 ○ 학교시설에 이재민 수용 임시조치 ○ 재난대응자원 구호소(학교체육관 등) 지원	○ 학교시설 피해 복구 ○ 재난대응자원 구호소(학교체육관 등) 지원
전남지방경찰청 —		○ 신속한 현장 출동 ○ 재난관리부대 등 긴급지원 우선 배치 ○ 경찰통제선 범위설정, police line 설치 - 사고발생 현장 통제 및 비상로 확보 ○ 현장 응급구조 및 안전관리 지원 ○ 주·유관기관 인력 및 장비의 신속출입을 위한 교통관리	○ 주민대피·긴급 구조 활동 지원 및 사상자 후송 지원 ○ 우회도로 확보 및 인근 교통 정리 ○ 교통통제 및 현장출입 제한 ○ 재난지역 인명구조 지원 ○ 경찰통제선 범위설정, police line 설치 - 사고발생 현장 통제 및 비상로 확보 ○ 주·유관기관 인력 및 장비의 신속출입을 위한 교통관리	○ 교통통제 등 현장 질서유지 ○ 재난 현장주변 순찰 및 위법행위 단속 ○ 원활한 수습·복구를 위한 복구현장 차량 등 교통통제 ○ 재난 관련 유언비어 등 사이버범죄 수사 ○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협조/지원
서해해양경찰청		O 행정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관계기관 통보	○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 ○ 피해지역 선박 입출항 통제 ○ 인명구조, 구난활동 ○ 해양 오염 제염활동 지원	○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 피해지역 선박 입출항 통제○ 해양 오염 제염활동 지원
육군제31보병사단		○ 지정 협력부대 출동지원태세 점검 및 상황실 운영 등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수색, 구조·구급 지원 ○ 주민대피·긴급 구조 활동 지원 및 사상자 후송 지원 ○ 교통통제 및 현장출입 제한 지원 ○ 수습·복구에 필요한 군병력 및 장비 지원 ○ 오염지역 제염활동 지원	○ 수습·복구에 필요한 군병력 및 장비 지원 ○ 교통통제 및 현장출입 제한 지원 ○ 오염지역 제염활동 지원
해군제3함대사령부		○ 지정 협력부대 출동지원태세 점검 및 상황실 운영 등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수색, 구조·구급 지원 ○ 수습·복구에 필요한 군병력 및 장비 지원 ○ 해양 오염 제염활동 지원	○ 수습·복구에 필요한 군병력 및 장비 지원 ○ 피해지역 선박 입출항 통제 ○ 해양 오염 제염활동 지원
공군제1전투비행단		O 지정 협력부대 출동지원태세 점검 및 상황실 운영 등 O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수색, 구조·구급 지원 ○ 수습복구에 필요한 군병력 및 장비 지원 ○ 오염지역 제염활동 지원 ○ 피해지역 상공 비행 통제	○ 수습·복구에 필요한 군병력 및 장비 지원 ○ 오염지역 제염활동 지원 ○ 피해지역 상공 비행 통제
광주지방기상청	O 기상정보 제공	O 기상정보 제공	O 기상정보 제공	O 기상정보 제공
한국전기공사 광주전남지사		○ 전기피해시설 파악 ○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지원 등 비상출동태세 점검·정비 ○ 주변지역 우회공급 방안 대책수립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현장 대응 장비·시설 전력 공급 ○ 주변지역 우회공급 방안 대책시행 및 응급조치 ○ 복구계획수립 시행 : 시공업체 공사 지시 및 시행 후 사고 원인제 공자에게 비용 청구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력 공급 	○ 피해 전기 시설 복구 ○ 안전점검 및 안정적 전기 공급 ○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협조/지원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사		○ 가스 공급·사용시설 피해 파악 ○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지원 등 비상출동태세 점검·정비 ○ 주변지역 우회공급 방안 대책수립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가스안전점검	 ○ 주변지역 우회공급 방안 대책시행 및 응급조치 ○ 복구계획수립 시행 : 시공업체 공사 지시 및 시행 후 사고 원인제 공자에게 비용 청구 ○ 사고 현장 가스차단 조치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가스 공급 	○ 피해 가스공급 시설 복구 ○ 안전점검 및 안정적 가스 공급 ○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협조/지원
KT 전남본부		○ 통신시설 피해 파악 ○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비상출동태세 점검·정비	 ○ 피해 통신시설 긴급소통대책 수립시행 ○ 재난방송 지원 및 통신시설 안전관리 ○ 복구계획수립 시행 : 시공업체 공사 지시 및 시행 후 사고 원인제 공자에게 비용 청구 ○ 주변지역 원활한 통신소통 확보 	O 피해 통신시설 복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 사고전파에 따른 (봉사원 비상소집) ○ 응급구호물품 요청(현장상황파악) ○ 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구호활동 전개 ○ 서울지사 긴급대응반 운영(현장 상황파악)	O 이재민 구호소 설치 시 구호물품 지급 O 구호급식활동 실시 O 심리상담반 운영 지원 O 긴급구호 대책본부 및 현장 재난구호봉사단설치·운영	O 심리상담반 운영 지원 O 수습·복구 자원봉사자 및 지원인력 급식 지원

Ⅲ 관련 부서 협업기능

기	능	① 상황관리 총괄	② 물자관리 및 자원 지원
실두	무반	종합조정반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운영지원반 (<mark>총무과</mark> , 예산담당관, 사회재난과)
협업	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한빛원전, KINS ¹⁾ , KINAC ²⁾ , KIRAMS ³⁾ ,	경찰청, 해경청, 소방서, 육군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교	전라남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한빛원전 민간환경 · 안전 감시센터 *** 선비상접수 및 전파,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징후접수 및 파악] ○ 이상상태 접수(신고접수) ○ 이상상태 조사 및 보고] ○ 이상상태 전파 ○ 이상상태 전파 ○ 이상상태 전파 ○ 이상상태 학인 및 평가 ○ 이상상태 대용지 [백색 · 청색 · 적색비상 상황접수 및 파악] ○ 백색비상 상황 접수 ○ 백색비상 상황 접수 ○ 백색비상 상황 파악 ○ 상황 천고 ○ 현장출동 및 초기대용 조치] ○ 현장출동 및 초기대용 조치] ○ 현장출동 및 보기대용 조치] ○ 현장 급히 및 대청상황 파악 ○ 건급구조구급 협조 및 지원사항 파악 ○ 초기대용팀 및 재난종합상황실 가동] ○ 현장 피해 및 대청상황 파악 ○ 상황보고서 작성 및 전파 ○ 재난상황 수시보고 및 전파공유 ○ 상황판단회의 개최 ○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 요청 ○ 관계기관 대책회의 준비 및 개최 ○ 재난상황 단계별 상황실 반묵은영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 ○ 지대본 가동 준비 [전라남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 지대본 설치 및 가동 ○ 지대본 실무반 편성 ○ 지대본 문영 및 지원 [재난 및 사고 복구] ○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주민복귀 결정사항 이행 ○ 재난피해 재발방지대책 강구 [언론대응] ○ 언론 모니터링	공군제1전투비행단, 민방위대, KINS
	협 업 기 관	[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방재환경과)] ○ 상황 분석ㆍ평가 [KINS(영광주재검사팀)] ○ 사고상황 조사 지원 및 자문 [한빛본부(방재대책팀/당직실)] ○ 사고확대방지 및 원인 조사 [KINS(원자력비상대책실)] ○ 원자로 안전상태 감시 및 평가 [KINAC(물리적방호실)] ○ 전문가파견 및 현장 조사활동 지원 [KIRAMS(통제상황실)] ○ 방사선비상진료 태세 확인 및 점검 [한빛원전 민간 환경ㆍ안전 감시센터] ○ 사고확대방지 및 원인 조사	[경찰청] ○ 재난 현장 필요 인력·자원 지원 [해경청] ○ 재난 현장 필요 인력·자원 지원 [소방서] ○ 재난 현장 필요 인력·자원 지원 [육군·해군·공군] ○ 재난 현장 필요 인력·자원 지원 [민방위대] ○ 재난 현장 필요 인력·자원 지원 [민방위대] ○ 재난 현장 필요 인력·자원 지원 [KINS] ○ 방사능방재 전문인력·자원 지원

기능	③ 긴급 생활안정 지원, ④ 교통 대책, ⑤ 자원봉사 관리, ⑥ 사회질서 유지
실무반	주민보호반 (여성가족정책관실, 도민행복소통실, 자연재난과, <mark>노인복지과</mark> , 장애인복지과, 식품의약과, 도로교통과, 해운항만과, 농식품유통과 수산유통가공과, 축산정책과, <mark>자치행정과</mark>)
협업기관	경찰청, 해경청, 소방서, 교육청, 보건소, 육군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공군제1전투비행단, 민방위대, KINS, 대한적십자사
전리님도빙시능빙자대착본부	- 이새인 생활 필수 시설 확충 이 이재민 구호 - 이재민 급수, 급식 지원 - 구호물품 소요량 등 구호상황 파악 - 구호물자 확보 및 지급 이 구호물자 지원 요청 - 구호기관 물자정보 및 지원 요청 - 구호기관 물자정보 및 지원 요청 - 구호물자 지원관련 홍보 요청 - 임시주거시설 확보 및 지원 - 수용시설 자익수용자 거주대책 마련 [교통상황파악] 이 재난발생 주변지역 교통상황 파악 및 관리 - 의사가 및 한공 교통상황 파악 및 관리 - 이 유산 해산 및 항공 교통상황 무니터링 확인
협 업 기 관	걸 │ ○ 재난 현장 필요 인력·자원 지원 기 │[공군]

건축개발과, 에너지신산업과, 물환경과, <mark>해운항만과</mark>) 구조구급과)	홍보협력반 대변인실,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소방서, 보건소,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경찰청, 해경청, 소방서, KT전남본부, 한국가스공 방사선비상진료병원, 광역응급의료지원센터, 어합정. 사, 한국전력공사, KINS 육군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공군제 1전투비행단, 민방위대	정보센터, 언론사
대 전	러기경보 전파 내난방송 국민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보 대응] 전론 모니터링 권도자료 작성 및 배포 2보대응

Ⅳ 관계기관 주요 임무(국내원전 방사능누출)

부 처	초기 대응 단계 • 예비현장지휘센터	중대본 운영 • 현장지휘센터	수습·복구단계	
<u></u> 구 시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시	방사선 청색 • 적색비상 발령시	구급'축구인계	
원자력안전 위원회	• 비상발령보고 및 상황 전파, 대책회의 개최 •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및 예비현장지휘센터 발족 • 운영 • 유관기관 초기 비상대응조직 발족 및 상황 관리 지시 • 위기징후 변화양상 모니터링, 연합정보센터 대응활동 지원 • IAEA 조기통보 및 인접국 통보 • 현장지휘센터 파견요원 긴급이송 헬기지원 "준비" 요청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 ■ 운영 ■ 비상상황 대응 총괄 조정, 현장 대응활동 지휘 ■ 통제 ■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협조 요청, 연합정보센터 운영 언론대응 일원화, 재난방송 및 재난문자 요청 ■ 긴급 주민보호조치(대피・소개・음식물섭취제한・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등) ■ 육・해・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방사선비상진료소 운영 ■ 방사능재난 발생 선포・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IAEA 조기통보 및 인접국 통보, 정보제공 재난홈페이지 개설 ■ 장기 상황 관리방안 수립 등	 사고의 수습 및 복구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합동조사위원회 설치 방사능재난 상황 조사 재난조사, 피해보상대책, 국가 차원의 방사능재난 사후대책 보고 외국의 사고 수습 및 복구기술 지원요청(필요시) 원자력시설 및 비상계획구역 내 복구 완료시 수습 및 복구완료 선언 지자체,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주민복귀 여부를 결정 주민복귀를 위한 상황정보 수집 및 평가 	
국가안보실	■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재난상황 총괄관리 및 통합적 위기관리체계 가동	▪재난상황 총괄관리 및 후속 대응반 운영	
대통령비서실	■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후속대응 및 복구	■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후속대응 및 복구	
행정안전부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	 방사능지원본부 운영(필요시) 재난온라인방송 및 재난문자 전송 지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현장 파견 지자체 단체장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 피해지역 인력 및 재정지원 방안 강구 	▪ 상황 모니터링 강화 ▪ 피해지역 인력, 장비 및 재정지원 방안 강구 ▪ 방사능 오염피해 공동조사 참여	
국방부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주민보호 및 제염을 위한 인력(군, 예비군) 및 장비 지원 방사능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교육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구호시설(학교) 지정 및 운영 관련 협조·지원 ■피해예상지역 학생 대피 관련 협조·지원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학사 일정 조정 ■학교·연구기관 등의 언론대응활동 모니터링 및 관리		
보건복지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현장 응급의료 지원(필요시) ▪지역 안정화를 위한 지역 주민 심리 개입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현장 파견	•지역주민 및 대국민 심리안정화 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원전 사고시 원자력연구기관 활용 인력·장비 및 상황분석 지원 • 유언비어 차단, 언론 홍보활동 지원 • 국내외 긴급 통신수단 지원 •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 원자력연구기관 운영 연구용원자로 복구 지원	▪ 유언비어 차단, 언론 홍보활동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에 대한 방호 조치 ■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의 방사능오염에 관한 통제		
해양수산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국내 생산(유통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항만 방사능오염 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어항 및 수산시설 보호 피해지역 생산 수산물(유통전)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및 출하 제한 		

ㅂㅋ	초기 대응 단계 • 예비현장지휘센터	중대본 운영 • 현장지휘센터	스스 보그리게
부 처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시	방사선 청색 • 적색비상 발령시	수습·복구단계
환경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막는 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준비 방사능오염에 의한 급수 중단 대비 비상급수체계 확보 환경매체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오몀 관리・검사 실시 	
국토교통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위기대응 관련 중장비 지원 해당지역 항공기 운항통제 준비 오염제거를 위한 중장비 지원 필요시 긴급물자 및 인력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공항 방사능오염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피해지역 항공기 운항 제한 실시 	
산업통상 자원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원전시설 복구 지원(소외전원 복구 관련 한전 지원 포함)● 전력 수급 지원●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언론대응 활동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혼란 대응 가용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및 재난발생 내용 발표지원 언론인터뷰가이드 제공 등 언론대응활동 지원 	
외교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재난상황에 대한 국제간 정보 교환 국내 외국대사관에 대한 사고 상황 통보 외국인 사상자 발생 시 관련상황 전달 외국의 지원협조에 대한 정부대응창구 운영 	
기획재정부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사고수습에 필요한 특별예산 지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유통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피해지역의 유통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및 출하 제한	
경찰청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특이상황 감시 및 치안 유지 주민소개시 교통통제 및 방사능오염지역 출입통제 실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기상청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정보 제공 ■ 공중방사능 탐사 지원(항공기 등)	
해양경찰청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해당지역 어로행위 및 선박운항 통제 해양방사능 탐사 지원(경비정 등) 지자체 주민보호조치 대응활동 지원 특수구조대(해경) 가동 긴급구조(필요시) 등 	
소방청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공중방사능 탐사 헬기지원지자체 주민보호조치 대응활동 지원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 운영 ■비상상황 접수 및 관계기관 통보 ■비상상황 모니터링 강화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확대 운영 ■주민보호조치 준비 점검 및 시행(수송수단 확보, 대피・소개, 갑상선방호약품배포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주민소개시 교통통제, 오염지역 출입통제, 긴급 구조구난, 의료지원, 인명구조 및 후송 등) ■이재민 수용 및 구호, 피해접수센터 운영	 재난지역 중장기 방사능 영향 평가 중장기 피해복구계획 수립(시행계획, 실시계획) 주민복귀를 위한 실시계획 수립 사후대책 수립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목 적

제2절 적용 범위

제3절 관련 법규

제4절 용어 정의

제1절 목 적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라남도의 비상대응절차 및 조치사항을 규정

제2절 적용 범위

한빛원전의 방사능 누출시 위기대응에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전문기관 및 원자력사업자와 전라남도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 각 기능반별 요원의 활동에 적용

※ 방사능테러상황 시는 방사능테러대응체계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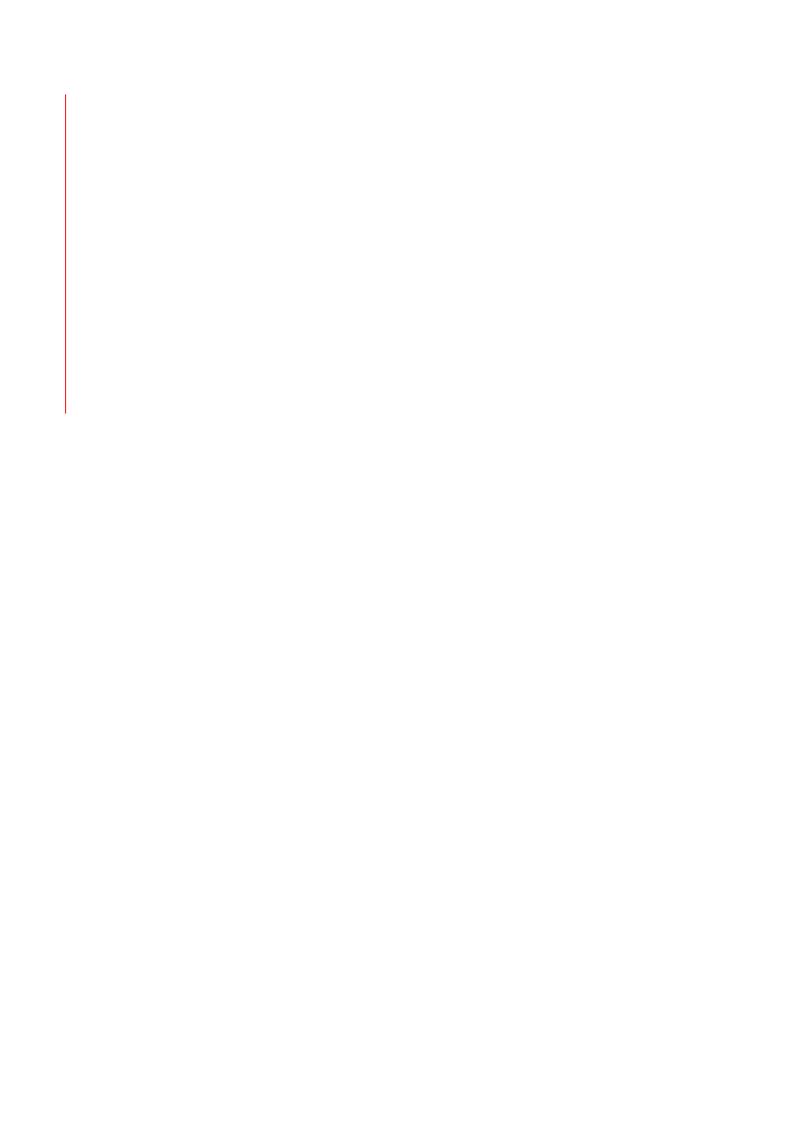
제3절 관련 법규

- 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법률 제15280호)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5764호)
- 다. 민방위기본법(법률 제14805호)
- 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 마.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위기관리 표준매뉴얼('19.03.)
- 바.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위기대응 실무매뉴얼('19.07.)
- 사.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서
- 아. 2019 전라남도 방사능방재계획

제4절 용어 정의

Ξ	구 분	내용
국	가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	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난관리 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관기관	해당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Ы	상상황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로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비상상황은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수습형, 완만 진행형, 순간증폭형으로 구분
	결과 수습형	• 상황 발생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나타난 유형
	완만 진행형	• 상황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각성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유형
	순간 증폭형	• 발생 초기에는 저강도 비상상황으로 보여지나,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대응력의 한계가 노정되고 실패시 중대재난으로 귀결되는 유형
의 관심(Blue) : 위기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을 말한다. 관심 경보 단계에서는 정후 감시활동을 하고 연락망 등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② 주의(Yellow) : 위기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함의 경보 단계에서는 관련 정보수집 및 정보 공유 활동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③ 경계(Orange) : 위기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를 한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말한다. 경계 경보 단계에 기관은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관련기관과 함께 인적 *물의 동원을 준비한다. ※ 방사선비상(백색비상)에 해당 ④ 삼각(Red) : 위기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상이 확실시되는 상태를 말한다. 심각 경보 단계에서 작은 관련기관과 함께 관련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여 위기주각적으로 대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한다.		② 주의(Yellow): 위기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주의 경보 단계에서는 관련 정보수집 및 정보 공유 활동을 강화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③ 경계(Orange): 위기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말한다. 경계 경보 단계에서 주관기관은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관련기관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준비한다. ※ 방사선비상(백색비상)에 해당 ④ 심각(Red): 위기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를 말한다. 심각 경보 단계에서 주관기관은 관련기관과 함께 관련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여 위기발생에

구 분	내용
	① 예방 :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위기관리	② 대비: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활동	③ 대응 :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④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사보타주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를 통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재산·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
방사능	불안정한 원소의 원자핵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려는 성질이나 능력으로서, 표준단위는 Bq(베크렐)을 사용. 1Bq는 1초에 하나의 핵이 변환 또는 붕괴되는 양 1 Ci(큐리) = 3.7 ¹⁰ Bq
방사선	물질 내에서 원자를 전리시키는 능력이 있는 입자선(알파입자, 베 타입자 등) 또는 전자파(감마선, 엑스선 등)
방사성물질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原子核分裂生成物) 등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 ※ 핵연료물질 :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방사선비상 계획구역 (EPZ)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옥내대 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으로 구분 ※ EPZ: Emergency Planning Zone
예방적보호 조치구역 (PAZ)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 PAZ: Precautionary Action Zone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UPZ)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 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 ※ UPZ: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제2장 위기유형 및 방사선비상

제1절 위기 유형

제2절 전개 양상

제3절 위기대응 지침

제4절 방사선비상 발령

제5절 위기관리 업무수행체계

제6절 평시 위기관리 활동



제1절 위기 유형

■ 사고 원인

- 자연재난, 인적 오류 등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 중요 핵심부품의 결함에 의한 방사능 누출

■ 사고 유형

○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로 인해 주변지역 가축·식수 오염, 인근 지역 주민 방사선 피폭 등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제2절 전개 양상

- 자연재난, 인적오류 등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 ⊙ 중요 핵심부품의 결함에 의한 방사능 누출



● 원자력시설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



- 발전소 종사자 및 인근지역 주민 방사선 피폭
- 인근지역 농·수산물, 가축 및 취수원 오염
- 방사성물질의 침적으로 인한 피해확산

제3절 위기대응 지침

2.3.1 대응 개념

■목 표

○ 지역방사능방재체계 확립 및 현장 방재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재난 수습·조치 및 피해 확산 방지

■ 대응 방향

- 방재 대응시스템 총 가동, 피해 최소화 주력
- 재난책임·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가동을 통한 주민보호조치
- 2차 사고에 대비한 현장대응 및 주민보호, 수습 활동

2.3.2 대응 지침

- 정부, 전문기관, 원자력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조, 효율적 주민보호를 위한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동조치
 - 원자력사업자,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한 징후 등 조기탐지
 - 道·기초지자체의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및 영광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중심의 유관기관별 대응활동 및 주민보호조치 실시

■ 주민대피 및 긴급구호 활동 전개

- 긴급구조구난을 위한 구급요원 비상대응 및 현장대응활동(지원)
- 주민 옥내대피 및 소개(피난) 실시, 오염구역설정 및 출입통제
- 음식물섭취제한,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및 복용
- 방사능 제염, 방사성물질 회수 및 처리 지원(전문기관 협조)
- 광역·기초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운영
- 유관기관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상황실을 운영하여 효율적 주민보호조치 및 피해 확산방지, 긴급 복구 지원 등 조치

■ 방사능방호기술 및 의료지원 등 전문기관 총력 대응체계 가동

- 방사능 방호기술지원본부 발족 및 운영(사고의 분석·평가, 방사선 영향평가 등 기술지워)
- 방사선 비상의료지원본부 발족 및 운영(피폭환자 관리)

■ 방사선 피폭환자 관리

- 방사선비상진료 활동 수행
- 방사선피폭환자 사후조치

■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분석 및 사후조치 수행

○ 사고원인 평가를 통한 보완 계획 수립 및 이행

■ 위기징후 목록

위기 형태 (4개)	위기징후 (5개)	감시수단 (9개)	감시방법	조치 (대비·대응)
1.	1.1 원전 불시정지	o 한수원 원전 종합 상황실 (24시간 근무)	○ 원전 운전변수 감시 ○ 조기경보 프로그램을 통한 발전소 건전성 확인	○불시정지 대비 대응 태세 가동 ○사고·고장 및 특이징후
원자력 시설	※ 각종 수동 및 자동정지 포함	◦ KINS AtomCARE 시스템	o 원전 운전변수 감시	발생 시, 초기 상황파악 및 보고(지역사무소)
사고·고장	1.2 각종 검사·점검 과정에서 특이 징후 발견	ㅇ일상검사, 특별 검사	ㅇ검사과정에서 발행된 지적사항표 등	○필요시 사건조사 및 대응조치 (본부·지역사무소 등)
2. 지진	2.1 지진 진동 감지	○ 지진감시기 계측값 (기상청, 원전, KINS)	○ 지진감시기 모니터링 ○ 기상청 지진정보 발표	○감시 강화, 지진영향 분석, 상황대응반 운영
3. 태풍	3.1 태풍 등에 의한 특이징후 발생	○기상청 예보 ○원전 기상감시	○ 기상예보 모니터링 ○ 원전 기상상황 감시	○재난 감시 강화, 사 전 대비태세 점검, 상황대응반 운영 ○특이징후 발생 시,
4. 화재	4.1 방사선관리구역 내 화재발생	○화재감시기 ○운전원 ○외부소방서	○화재감시기 모니터링 ○운전원 현장순시	초기 상황파악 및 보고(지역사무소) ㅇ필요시 사건조사 및 대응조치 (본부·지역사무소 등)

^{*} 위기경보 : 피해규모 및 심각성에 따라 관심~심각

■ 위기경보

구 분	방사선 비상단계	판단기준	비고
관심 (Blue)	-	o 기기 고장, 종사자의 실수, 절차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운전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	징 후 활 동 감시
주의 (Yellow)	_	o 방사선비상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계통의 경보 발생	협 조 체 계 가동 및 대 비 계 획 점검
경계 (Orange)	백색 비상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안전 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대 응 태 세 점검 및 대 응 체 계 가동
심각 (Red)	청색비상 적색비상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즉 각 대 응 조치 시행

※ (방사선비상 이전) 위기경보 수준(관심, 주의)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 (방사선비상 이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규정된 절차 이행

제4절 방사선비상 발령

2.4.1 방사선비상 종류 및 대응조치

구 분	정 의	대응조치
백색비상	o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의 손상 또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 o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 내에 국한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비상발령보고, 상황전파 사고확대방지응급조치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응시설의 운영 지역방재대책본부 발족 운영 (상황실 및 연합 정보센터)
청색비상	 학색비상에서 안전상태로의 복구기능의 저하로 원자력시설의 주요 안전기능에 손 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내에 국한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백색비상 대응조치 수행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발족운영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운영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 운영 기술 및 의료 지원 조직 운영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확대 운영
적색비상	o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시설 의 최후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o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청색비상 대응조치 수행 방사능재난 발생 선포 검토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 실시

2.4.2 방사선비상 발령 절차

■ 비상발령

원자력시설 운전상태가 비상계획서에서 정한 비상발령기준에 해당됨을 확인한 **워자력사업자의 워자로우전책임자**는 방사선비상을 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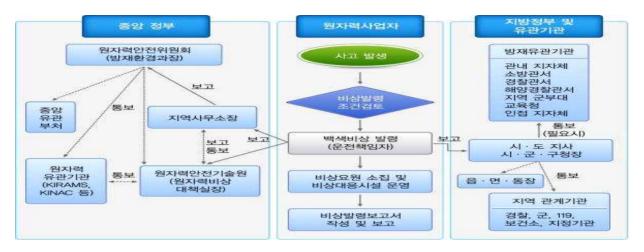
■ 비상발령 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비상발령 즉시 해당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외 방사능방재대책기관에 구두 보고 및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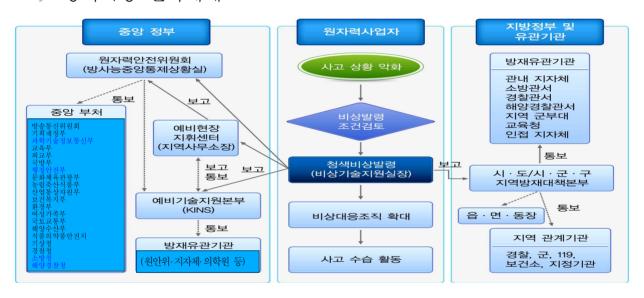
-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지역사무소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 군·구청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 비상발령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 초기 재난상황 접수
 - ▶ 한빛원자력본부 ⇒ 사회재난과 또는 재난종합상황실
 - 상황(백색 ~ 적색비상)전파
 - ▶ 발령(한빛원자력본부) ⇒ 접수(전라남도) ⇒ 전파(시·군, 유관기관)
 - ◆ 해당 실·국 (부서) 및 방재 유관기관 등
 - ◆ 시군(읍·면·동) 등 하위·소속기구 등에 전파
 - 지역 군·경·소방관서 및 교육청 등에 비상발령 상황 전파
 - 재난상황 내부보고
 - ▶ 사회재난과장 ⇒ 도민안전실장 ⇒ 행정부지사 ⇒ 도지사
 - 재난상황 외부보고
 -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능재난 즉시 선포(원안위)
 - ▶ 원자력시설 부지경계 전신선량률 10mSv/h, 갑상선선량률 50mSv/h 이상인 경우
 - ▶ 원자력시설 부지경계 공간방사선량률 1R/h, 오염도 1R/h 이상인 경우
 - ▶ 그 밖에 원지력안전위원회가 방시능재난의 발생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황별 전파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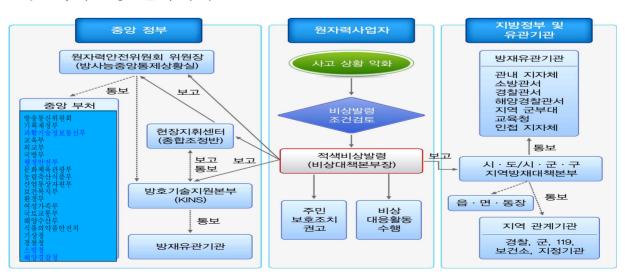
▶ 백색비상 전파체계



▶ 청색비상 전파체계



▶ 적색비상 전파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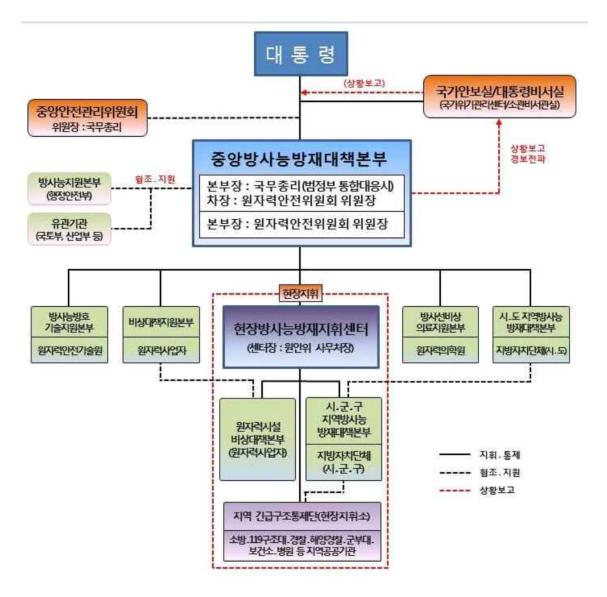


2.4.3 전라남도 방사선비상별 대응조치

구 분	대응조치
백색비상	• 재난상황 파악·보고 및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가동 준비
	• 원전현장 및 현장방사능방재센터 출동
	고 재난현장 상황총괄 및 보고
	• 비상발령접수보고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제 등 정비
	• 시·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 전 직원비상대기 및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요원
	24시간 근무체제 유지(2교대 근무)
	• ERIX(방사선비상대응정보교환)시스템 사용 준비
	● 환경방사선 감시망(20개소) 비상모드전환 (감시주기 15분⇒5분)
	• 백색비상 대응조치 수행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확대 설치·운영
	▶ 유관기관 연락 및 파견요청
ાં પ્રાન્થ પ્ર	• 비상사태 정보수집 및 대외 협조기관의 분담 역할 수행
	• 주민보호조치(대피, 소개, 약품복용 등)준비 및 수행
청색비상	주민대피 유도요원 사전 배치(집결지 등) 준비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계획 점검·확인
	주민안내 비상경보방송 준비 및 실시(필요시) 등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팀장급 이하 등 4명 파견
	▷ 긴급사태 응급대책 등 협의
적색비상	• 청색비상 대응조치 수행
	• 권고 즉시 주민보호조치 시행 및 주민보호 대응활동 개시
	• 현장 응급조치요원 방호조치
	• 관계기관 및 대외협조기관 분담역할 수행(주민대피·소개,의료
	및 구호, 환경보호, 오염지역 제염, 민방위대 동원, 복구 등)

<u>제5절</u>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2.5.1 | 종합 체계도



※ 유관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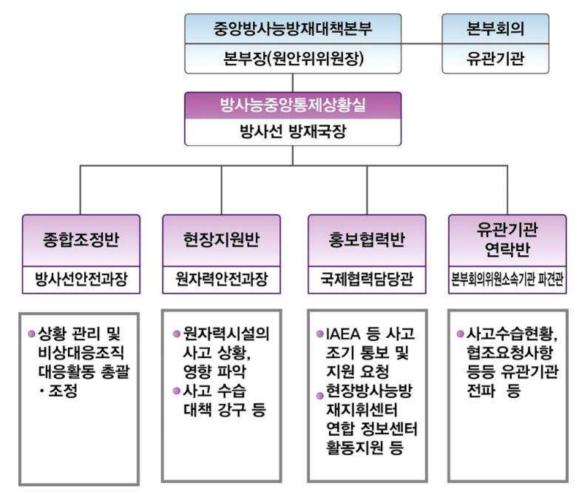
2.5.2 | 위기관리 기구

구 분	기 능	비고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o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o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o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u>대통령비서실</u> (소관비서관실)	o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o 후속대응 및 복구	
<u>중앙안전관리위원회</u>	o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	
	o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이행 o 방사능 재난의 평가 및 발생의 선포 o 방사능재난 수습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총괄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무총리* 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본부회의 본부장(원안위위원장) 유관기관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변수 기 보는 원인의 기원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 본부회의 참석 유관기관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유관기관 연락반 : 본부회의 위원 소속기관 파견관 등	
	** 규전기관 현력한 : 본구회의 위원 도록기관 파견관 등 O 방사능재난 현장대응활동 총괄 지휘 O 주민보호 의사결정을 위한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주관 O 시·군·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휘 및 방재요원 임무 부여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mark>원안위 사무처장)</mark>	중합조정반 사고분석반 방사선평가반 주민보호반 의료지원반 운영지원반 합동방사선 감시센터 비상진료센터 나사진료센터 방사는 및 기업 및 기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파견 부처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 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 전처,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구 분	기 능	비고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시·도 및 시·군·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o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 뉴얼 등의 이행 o 지방행정기관과의 행정조치 및 업무 협조 o 긴급구조활동 지휘 및 통제 o 주민보호조치 이행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o 비상대응시설 가동 및 비상대책본부 발족.운영 o 사고.복구 현황 보고 o 사고확대 방지, 원인조사, 피해복구 및 제염활동 o 사고영향평가, 주민예상피폭선량평가, 주민보호조치 권고 등 비상대응활동 수행	
방사능 방호기술지원본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o 사고해석 및 평가·예측 o 방사선측정, 방사선영향 평가 o 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 o 방사선방호 관련 기술자문단 운영	
방사선 비상의료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장)	o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운영 o 방사선피폭 환자 제염·치료 o 방사선 인체영향과 관련된 전담상담팀 운영 지원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국무조정실)	o 안전관리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o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안 심의 o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2.5.3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응체계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운영



※ 유관기관(연락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인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기상 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 력연구원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파견 부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 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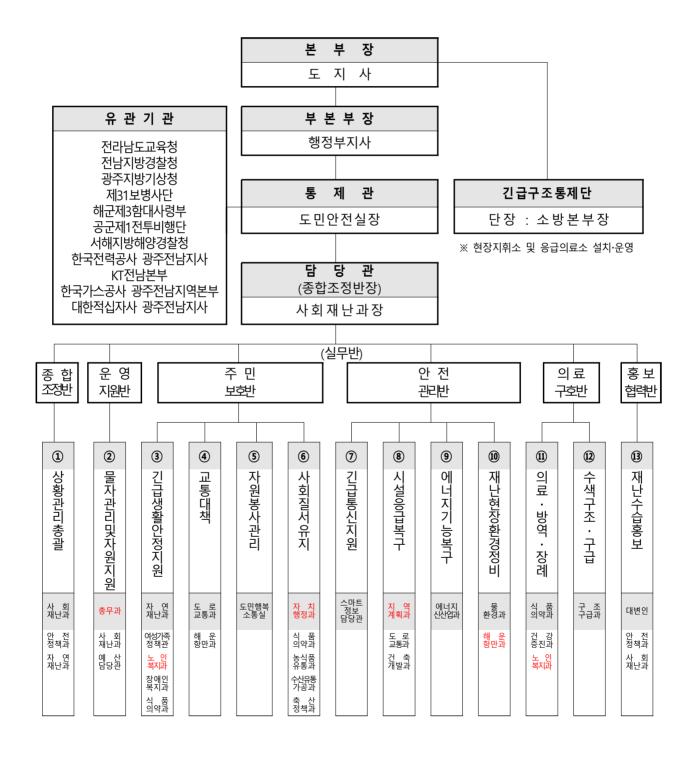
○ 기 능

구 분		분	주 요 역 할
	본	-부회의	o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사항, 주민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사항 등 의결
		종합 조정반	o 중앙본부장,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에 상황 종합 보고 o 상황정보 종합관리 o 본부회의 운영 o 실무반 역할 조정 및 운영
중앙 방사능 방재 대책	방사능 중앙	현장 지원반	o 원자력시설 사고 상황, 사고예측 결과 종합 o 현장지휘센터 대응활동 및 지원필요사항 종합 검토 o 사고 수습대책 강구
본부	통제 상황실	홍보 협력반	o 연합정보센터 운영지원 o 재난온라인방송, 재난 문자전송 요청 o IAEA 및 주변국에 사고 정보 제공 및 지원 요청
		유관기관 연락반	o 본부회의 안건 실무 검토 조정 o 본부회의 의결사항 및 협조요청사항 소속 부처 전파 및 이행 종합 o 해당 유관기관 상황정보 공유 및 업무 연락
		합동방재 대책협의회	o 방사능재난 등의 수습과 주민보호대책에 대한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장 자문
		연합정보센터	o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언론대응 총괄
현 방 <i>사</i> 방		종합조정반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업무 종합 및 대외기관 창구 o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운영 및 실무반간 업무조정
지휘센터		사고분석반	o 원자력시설 사고 상황 수집 및 분석 o 방사선원항 평가 및 예측
	방사선평기반		o 현장 방사선영향평가 및 긴급 방호활동 o 합동방사선감시센터 현장 활동 총괄·지휘
		주민보호반	o 주민보호조치 총괄 o 주민보호조치와 관련한 현황파악, 종합 및 자료관리

구 극	분	주 요 역 할
	의료지원반	o 비상의료 대응 관리 및 지원활동 총괄·지휘 o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운영 및 총괄
	운영지원반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장비 운영·관리 등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출입인원·장비의 통제
	합동 방사선 감시센터	o 현장 방사선감시 및 평가·분석 o 지역, 기자재, 장비 및 차량에 대한 오염 관리
	합동 방사선 비상 진료센터	o 현장방사선비상진료 총괄 조정
시·도 지역방사능방재 대책본부		o 주민보호조치 이행
시·군·구 지역방사능방재 대책본부		o 주민보호조치 이행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		o 사고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지원
방사선비상 의료지원본부		o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비상진료 활동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o 사고 확산방지 및 수습

2.5.4 전라남도 대응체계

○ 전라남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



2. 구 성 : 54명(도 26개 실과, 6개반 43명/11개 유관기관 11명)

조직명(인원)	협업기능	업기능 구 성	
본부장(1)		· 전라남도지사	
부본부장(1)		· 행정부지사	
통제관(1)		· 도민안전실장	
담당관(1)		· 사회재난과장	
긴급구조통제단(1)		· 소방본부장	
종합조정반(4)	∘ 상황관리 총괄	∘ 반장 : 사회재난과장 ∘ 반원 : 사회재난과,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운영지원반(4)	· 물자관리및자원지원	∘ 반장 : <mark>총무과장</mark> ∘ 반원 : <mark>총무과</mark> , 예산담당관실, 사회재난과,	
	· 긴급생활안정지원	· 반장 : 자치행정과장	
7-1-2-7-3-(4-2)	∘ 교통대책	• 반원 : <mark>자치행정과</mark> , 자연재난과, 여성가 족 정책관, <mark>노인복</mark>	
주민보호반(13)	∘ 자원봉사관리	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의약과, 도민행복소통실, 도로교통과, 해운항만과, 농식품유통과, 수산유통가공	
	· 사회질서유지	과, 축산정책과	
	∘ 긴급통신지원		
	· 시설응급복구	· 반장 : 지역계획과장	
안전관리반(8)	· 에너지기능복구	반원: 지역계획과, 도로교통과, 건축개발과, 에너지신산업과, 물환경과, 해운항만과, 스마트정보담당관실	
	· 재난현장환경정비		
A) 그 구 되 / r \	∘ 의료·방역·장례	· 반장 : 식품의약과장	
의료구호반(5)	∘ 수색구조·구급	∘ 반원 : 식품의약과, 건강증진과, 소방본부(구조구급과), <mark>노</mark> 인복지과	
홍보협력반(4)	· 재난수습홍보	∘ 반장 : 대변인 ∘ 반원 : 대변인실,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유관기관(11)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 31보병사단, 해군3함대사령부, 공군제1전투비행단, 광주 기상청,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사, 한국가스공사광주전 남지사, KT전남본부,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 	

구 분		임무 및 역할		
본부장(도 지 사)		○ 전라남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비상대응활동 총괄		
부본부장(행정부지사)		○ 현장지휘센터 파견, 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임무 수행		
통제관(도	민안전실장)	o 방사능 비상상황 통제		
담당관(시	· 화재난과장)	○ 실무반 상황 보고·전파 총괄		
긴급구조통제]단(소방본부장)	o 화재진압, 긴급의료구호, 주민보호 비상대응활동		
	사회재난과	 ○ 각급 대책본부 비상연락·조정, 현장대응 상황 관리 ○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및 비상연락·조정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운영 ○ 정부 및 상급기관 지시사항 관리 등 ○ 방재요원, 유관기관 등 비상상황 전파 		
종합조정반	안전정책과	대책본부 지시사항 전달 및 시군 조치결과 확인사고 상황관리 및 문서관리민방위대 동원 및 군부대 지원 요청		
	자연재난과	○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의 복합상황 대응·수습		
	총무과	○ 방재요원 비상연락망 점검, 소집, 인원 점검		
운영지원반	사회재난과	○ 비상대응활동 필요 자원 수배·공급 등 상황대응 ○ 행동매뉴얼, 각종 비상대응 활동자료 파악 배포		
	예산담당관	○ 긴급예산 확보 및 정부예산지원 요청 등		
	자치행정과	○ 질서유지 및 주민보호, 대한적십자 협업 지원		
	도민행복소통실	○ 자원봉사자 지원 및 배치 관리, 민원관리		
	자연재난과	 구호소 운영관리(음식, 생필품 공급) 및 현장 구호센터 설치 지원 이재민 현황 파악 및 가족 찾기 지원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노인복지과	○ 노인 대피대책 및 보호시설 보호 상황대응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대피대책 및 보호시설 보호 상황대응		
주민보호반	식품의약과	○ 식품오염검사 및 음식물 섭취제한 등 식품안전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 보육아동, 다문화 등 특수계층 대피 및 보호조치		
	도로교통과	o 오염지역 우회로 설정 및 주민 수송대책 수배 지원		
	해운항만과	ㅇ 선박통제 및 내항 질서유지 지원 상황대응		
	농식품유통과	○ 농식품 유통통제 지원		
	수산유통가공과	○ 수산물 유통통제 지원		
	축산정책과	○ 축산물 유통통제 지원		

7	· 분	임무 및 역할
	스마트정보담당관	○ 대책본부 통신설비 및 긴급통신복구 지원 관리
	지역계획과	○ 현장응급복구 총괄, 인력·자원 수배 및 공급
	도로교통과	ㅇ 도로·교량 복구
안전관리반	건축개발과	ㅇ 붕괴 건축물 복구, 이재민 긴급주거지원
	에너지신산업과	○ 에너지 수급대책 수립 추진
	물환경과	ㅇ 재난 폐기물 및 제염 폐기물 처리 지원
	해운항만과	ㅇ 해양오염검사, 해양오염 제염(선박 등) 지원
	식품의약과	○ 구호소 현장진료소 운영 ○ 갑상선 방호약품 및 의약품 확보 지원 ○ 비상진료병원 운영관리 지원
의료구호반	건강증진과	ㅇ 구호소 방역 및 보건활동(보건소 등) 지원
	노인복지과	○ 사망자 장례지원 및 합동분향소 운영
	구조구급과	○ 긴급구조·구급활동 대응, 구조차량 배치 및 운용 ○ 공중수색 지원 및 비상헬기 운용 등
· 홍보협력반	대변인실	○ 비상상황 및 주민보호 조치사항 대주민 홍보 ○ 주민행동요령 홍보 및 주민 유도방송 지원 ○ 보도자료 배포, 취재 대응, 언론분석, 유언비어 통제
	안전정책과	ㅇ 민방위 비상경보 전파
	사회재난과	○ 재난방송(DMB) 및 재난문자(CBS) 전파
	전남교육청	○ 학교(학생) 대피·소개 및 수송대책 확보 ○ 학생 보호대책 추진
	전남경찰청	○ 출입통제소 운영 및 교통통제, 소개차량 에스코트 ○ 소개지역, 구호소 등 치안(질서) 유지 및 순찰활동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 해상안전(질서) 유지 및 어선·선박 통제 ○ 환경방사선 탐사(해상) 및 오염방제 지원
	제31보병사단	제독소 운영 및 화학차 등 장비 지원방사능 오염환자 분류 및 제염활동 지원환경방사선 탐사(육상) 병력 및 장비지원
	해군3함대 사령부	ㅇ 해상 오염방제 및 주민대피 해상수송 지원
유관기관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독소 운영 및 화학차 등 장비 지원방사능 오염환자 분류 및 제염활동 지원환경방사선 탐사(공중) 병력 및 장비지원
	광주기상청	ㅇ 국지기상 및 예보 정보 제공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사	○ 긴급 전력복구 지원 및 수급 대책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사	○ 긴급 가스복구 지원 및 수급 대책
	KT전남본부	ㅇ 긴급 통신복구 지원 및 구호소 등 통신 설비 지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 이재민 구호활동 상황 대응 ○ 소개주민 급식 지원 ○ 그호스 보기하도 및 그호므프 기의
		ㅇ 구호소 봉사활동 및 구호물품 지원

제6절 평시 위기관리 활동

2.6.1 평시 방사능방재 대비 강화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개편^{*}으로 EPZ내 지자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 체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임무·역할을 명확화

- * EPZ 확대·세분화 : 기존 8~10km를 3~5Km(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최대 30km(긴급보호조치구역)로 재설정 완료('15.5.18)
- ** EPZ 개편후 지자체 수 : 광역(1), 기초(4), 총 5개 기관

○ 평시 원안위의 임무·역할

- ▶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및 표준·실무매뉴얼의 수립·유지
- ▶ 주민보호용 갑상선방호약품의 수급
- ▶ 원자력시설 안전점검 및 전국토 환경방사선 감시
- ▶ 방사능재난 대응을 위한 방재교육 및 방재훈련 실시
- ▶ 방사선비상대응시설 점검활동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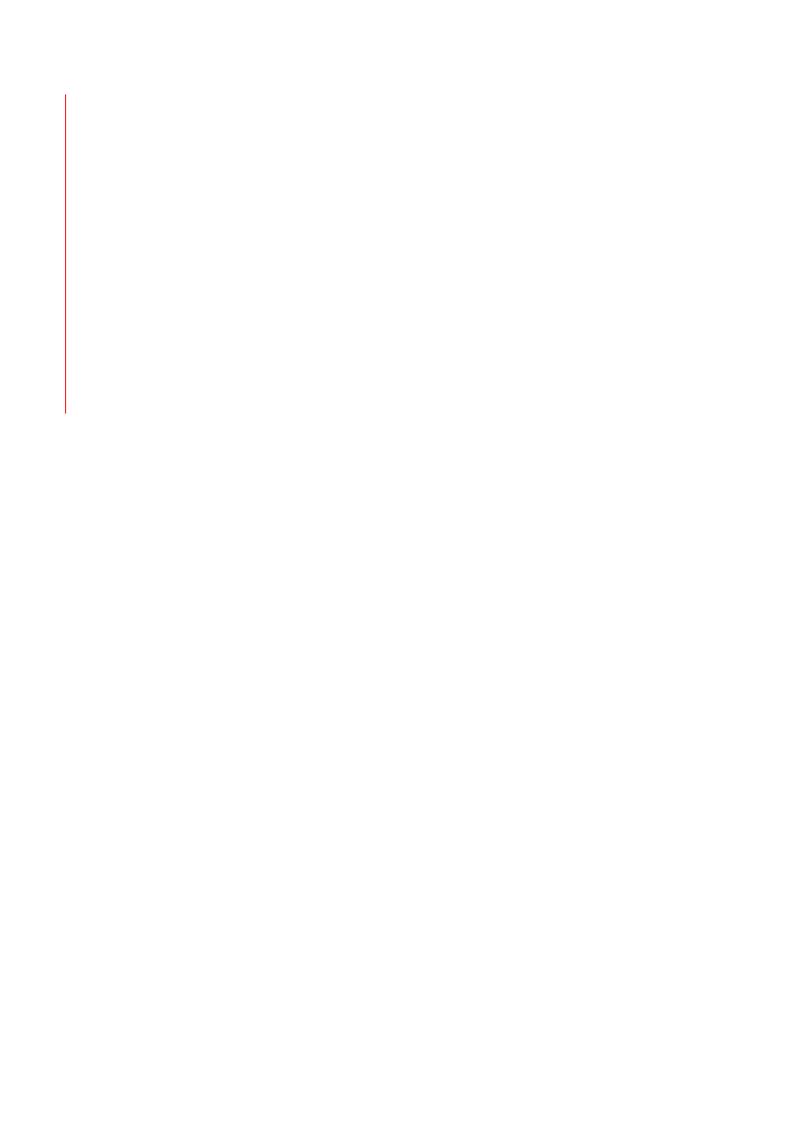
○ 평시 광역지자체의 임무·역할

- ▶ 다수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 및 조정
- ▶ 도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및 행동매뉴얼 수립·유지
- ▶ 주민소개 계획 총괄 수립 및 조정
 - 주민 수송수단(버스, 열차 등) 확보 및 동원업체 지정·관리, 주요 소개로 확충, 소개경로 지정, 기초지자체간 연계 등
- ▶ 구호소 지정(교육청협조) 및 구호소 운영 인력・물자 수급 관리
- ▶ 방사능재난 대응 교육·훈련 및 방사능방재요원 관리
- ▶ 갑상선방호약품의 비축 및 관리

○ 평시 기초지자체의 임무·역할

- ▶ 시·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및 행동매뉴얼 수립·유지
- ▶ 도 주민소개계획에 따른 실행계획

- 주요 소개로 확충, 주민대피 안내판 설치, 대피유도요원배치, 집결지 확충 등
- ▶ 방사능재난 대응 교육・훈련 및 방사능방재요원 관리
- ▶ 갑상선방호약품의 비축 및 관리



제3장 방사선비상 단계별 대응조치

제1절 징후감지(이상상태)

제2절 초기대응(백색비상)

제3절 비상대응(청색비상)

제4절 비상대응(적색비상)

제5절 수습·복구

제1절 징후 감지(이상상태)

가. 대응 지침

- O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
- O 신속한 접수 및 전파
- O 사고현황 파악 및 대응체계 사전점검

나. 지휘부 임무와 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도지사	O 징후대응 긴급조치 지시 - 방사능 방재 긴급조치 O (필요시) 비상대응체계 점검 지시 O (필요시) 비상근무 지시		
도민안전실장	○ 상황실 및 사회재난과 대응태세 점검○ 징후확인 및 재난대응부서 긴급조치 지시○ 재난대응부서 비상근무태세 확립		

다.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

징후 감지

코드번호: 1-1

행동요령

조치목록: 이상상태 접수·파악

조치내용: 이상상태 접수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자력본부

1. 접수 : 즉시

- O 사회재난과
- O 한빛방재전용선
- O 재난안전상황실
- 119종합상황실
- O 당직실
 - ☞ 상황 접수자는 즉시 사회재난과 원전안전팀장 및 담당자에게 내용 통보
- 2. 대상 위기징후
 - 원전 불시정지
 - O 각종 검사·점검 과정에서 특이 징후 발견
 - O 지진 진동 감지
 - 태풍 등에 의한 특이징후 발생
 - O 방사선관리구역 내 화재 발생
- 3. 접수 시 확인사항
 - O 접수상황
 - 접수시간
 - 접 수 자
 - 신고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등)
 - O 이상상황
 - 사고개요(발생일시, 장소, 원인)
 - 인명피해 상황
 - 한빛원전 조치사항
 - 방사능누출 가능성 여부 등

조치목록: 이상상태 접수·파악 행동요령 코드번호: 1-2

조치내용: 이상상태 파악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자력본부

1. 대상 기관

O 원자력안전위원회

O 한빛원자력본부

2. 확인사항: 접수내용에 의거 사고 진행 상황 파악

코드번호: 2-1

행동요령

조치목록: 이상상태 접수·전파·보고

조치내용: 이상상태 전파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자력본부

1. 전파시간 : 최단시간

- 2. 전파대상
 - O 소관 부서
 - O 소관 지자체
- 3. 전파 내용
 - O 발생일자 및 시간
 - O 발생장소 (호기, 위치)
 - O 현상 및 원인
 - O 현장조치 사항 (방사선 방호 측면, 부상자 여부)
 - O 비상발령으로 확대될 가능성
 - O 기타 특이사항
- 4. 전파방법 : 유 · 무선

코드번호: 2-2 행동요령

조치목록: 이상상태 접수·전파·보고

조치내용: 이상상태 보고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자력본부

1. 보고시간 : 최단시간

2. 보고대상

○ 경로 : 사회재난과장 → 도민안전실장 → 도지사・부지사

3. 보고내용

O 원전안전팀장은 한빛원전 관계자로부터 사고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하여 보고

* 사고원인, 원자력시설 운전 상태, 방사성물질 유출여부 등

O 보고내용에 이상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포함

4. 보고방법 : 先 구두 後 문서

코드번호: 3-1

행동요령

조치목록: 이상상태 대응

조치내용: 이상상태 확인 및 평가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자력본부

1. 이상상태 확인

- O 현장 확인 지시(필요시 직접 현장확인)
- O 이상상황 관련 사례 등 자료 확보
- O 원자력안전위원회 상황판단회의 확인

2. 이상상태 평가

- O 피해 발생 가능성 검토
- O 대응 조치사항 결정(초기대응팀 가동, 안전점검 등)
- O (필요시) 민간 전문가 자문 요청
 -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3. 평가 결과통보

O 관련기관, 지자체, 관련부서에 조치사항 통보

코드번호: 3-2

행동요령

조치목록 : 이상상태 대응

조치내용: 이상상태 대응조치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자력본부

1. 대응조치 : 최단시간

2. 정보수집 및 전파

O 이상상태 변화 등 예의주시 및 확인

3. (필요시) 필수요원 추가소집 및 비상근무 명령

4. 대응 상황 보고

○ 경로 : 사회재난과장 → 도민안전실장 → 도지사・부지사

조치목록 : 언론대응 행동요령 코드번호: 47-1

조치내용: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주관부서 : 대변인실

지원부서: 사회재난과, 안전정책과

현업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자력본부,

언론사

1. 언론 모니터링

O 실시간 뉴스보도 채널 시청

O 주요 신문보도 내용 검토

2. 오보대응

O 유언비어, 오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즉시 해명 및 브리핑 실시

- 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보도 요청
-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제2절 초기 대응(백색비상)

가. 대응 지침

- O 위기경보: 경계단계
- O 신속한 접수 및 전파
- O 초기대응팀 발족·운영
- O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에 대한 준비태세 확립

나. 지휘부 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도지사	[초동지시] ○ 초기상황 파악 및 현장 조치사항 지시 ○ 현장대응요원 즉시 현장출동 지시 ○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 인명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 방안
도민안전실장	[비상대응 준비] ○ 상황실 및 사회재난과 대응태세 확립 ○ 피해현황 조사 및 긴급대응·복구 조치 ○ 비상대응단계 상향조정 필요성 판단 보고 ○ 지대본 운영 필요사항 확인 - 설치장소, 근무반별 임무, 근무인원 등 [필요시] ○ 도지사, 부지사 대행 ○ 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 주재

다.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

초기 대응

조치목록: 백색비상 접수·전파·보고 행동요령 코드번호: 4-1

조치내용: 상황접수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자력본부

1. 접수 : 즉시

구 분	기 관	수 단	비고
발령	한빛원자력본부	ERIX시스템,	백색비상
접수	전라남도	유·무선, FAX	백객비형

O 사회재난과

- O 한빛방재전용선
- O 재난안전상황실
- O 119종합상황실
- O 당직실

☞ 상황 접수자는 즉시 사회재난과 원전안전팀장 및 담당자에게 내용 통보

2. 접수 시 확인사항

- O 접수상황
 - 접수시간, 접수자, 신고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등)
- O 이상상황
 - 사고개요(발생일시, 장소, 원인)
 - 인명피해 상황, 한빛원전 조치사항, 방사능누출 가능성 여부

조치목록: 백색비상 접수·전파·보고 행동요령 코드번호: 4-2

조치내용: 상황파악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자력본부

1. 대상 기관

O 원자력안전위원회

O 한빛원자력본부 비상대책실

2. 확인사항

O 발생일시, 장소, 현상 및 원인, 현장조치 사항(방사선 방호 측면, 부 상자 여부). 비상발령으로 확대될 가능성

초기 대응

조치목록: 백색비상 상황전파 및 보고 행동요령 코드번호: 5-1

조치내용: 상황보고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한빛원자력본부

1. 보고시간 : 최단시간

O 구두 : 비상발령 즉시

O 서면: 한빛원자력발전소는 비상조직 발족(백색비상 발령 후 1시간

이내 발족) 후 1시간 이내에 최초 서면보고, 이후 비상상황

에 대해 1시간마다 서면보고

2. 보고대상

○ 내부 : 사회재난과장 → 도민안전실장 → 도지사・부지사

O 외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3. 보고내용

- 재난발생의 일시, 장소와 원인, 피해내용, 응급조치 사항,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향후조치계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O 한빛원자력본부 최초보고, 매 1시간 마다 후속 보고내용 활용

조치목록 : 상황전파 행동요령 코드번호: 5-2 조치내용: 상황전파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합업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빛원자력본

1. 전파시간 : 최단시간

- 2. 전파대상
 - O 道 대책본부 소속 실·과, 지자체(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 3. 전파 내용
 - O 발생일자 및 시간
 - O 발생장소 (호기, 위치)
 - O 현상 및 원인
 - O 현장조치 사항 (방사선 방호 측면, 부상자 여부)
 - O 비상발령으로 확대될 가능성
 - O 기타 특이사항
- 4. 전파방법:유·무선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ERIX 시스템을 가동

조치목록 : 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 행동요령 코드번호: 6-2

조치내용: 긴급 현장지원 요청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전남지방경찰청, 영광군

1. 응급복구 지원(한빛원전 요청에 따라 필요시)

협업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협업내용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사	고객지원부		- 전기피해시설의 긴급복구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KT 전남본부	조직운영팀		- 통신시설 긴급복구 - 주변지역 원활한 통신소통 확보
해양도시가스			- 도시가스 긴급복구 - 가스누설지역 밸브차단 및 우회공급방안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2부		- 가스사고 대응조직 설치가동 및 전문가 지원
육군 1989부대	화학지원대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인명구조 지원

2. 현장통제 지원요청(백색비상 유형에 따라 필요시)

협업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협업내용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주민 대피 지원 - 재난관리부대 등 긴급지원 우선 배치 - 경찰통제선 범위설정, police line 설치 • 사고발생 현장 통제 및 비상로 확보 - 현장 응급구조 및 안전관리 지원 - 주·유관기관 인력 및 장비의 신속출입을 위한 교통관리 - 원활한 구조·구급지원을 위한 포토라인 지정운용

3.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요청(백색비상 유형에 따라 필요시)

협업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협업내용
영광군보건소	보건행정	061) 350-5552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요청

조치목록 : 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 행동요령 코드번호: 6-3

조치내용: 현장 대처 상황 파악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한빛원자력본부

1. 파악시간 : 매 1시간 마다

O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비상조직 발족(백색비상 발령 후 1시간 이내 발족) 후 1시간 이내에 최초 서면보고, 이후 비상상황에 대해 1시간마다 서면보고 내용 활용

- 2. 파악내용 : 별지 서식 제1호 참조
 - O 비상발령의 전개상황
 - O 시설 및 인명 피해상황
 - O 방사능방출정보
 - O 기상정보에 의한 방사능 확산예상지역
 - O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조치목록 : 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 행동요령 코드번호: 6-4

조치내용: 긴급구조구급 협조 및 지원사항 파악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전남지방경찰청, 소방본부

1. 파악시간 : 매 1시간 마다

2. 파악대상

O 긴급구조구급 현황

연번	상태	성별	성명	생년월일	구조기관	구급기관	후송병원	비고
	사망							
	중상							
	경상							

O 지원사항

연번	기관명	지원사항	비고

조치목록 : 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 행동요령 코드번호: 6-5

조치내용: 초기대응팀 가동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원지력안전위원회, 영광군, 한빛원지력본부, 협업기관: 사내로:

1. 구성시간 : 백색비상 발령 후 1시간 이내

2. 초기대응팀 조직

조치목록 : 초기대응팀 및 재난종합상황실 가동 행동요령 코드번호: 7-1

조치내용: 현장 피해 및 대처상황 파악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빛원자력본부, 협업기관: ,,,,,,,,,,,,,,,

시군 상황실, 소방본부

1. 파악방법

O 국가방사능방재대응시스템 이용

- 접속주소 : http://erix.kins.re.kr

협업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협업내용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상황총괄반		- 국가방사능방재대응시스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요구

O 유선망 이용

구 분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
MCR	전화번호						
TSC	전화번호						
	팩스번호						
OSC	전화번호						
	팩스번호						

2. 파악내용

- O 한빛원전 사고 및 대응현황
- O 긴급구조구급 현황
- O 기타 필요사항

조치목록 : 초기대응팀 및 재난종합상황실 가동 행동요령 코드번호: 7-2

조치내용: 상황보고서 작성 및 전파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한빛본부, 시군 상황실, 소방본부

1. 작성 및 전파 시기

O 한빛원자력본부 매 1시간 보고서 접수 직후

2. 작성 요령

- O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고된 비상발령 보고서 참고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된 추진상황을 기초로 작성
- O 인명피해 현황은 소방 및 응급의료소와 협의 작성

3. 전파 요령

-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AtomCARE)
- O FAX 등 유선망

4. 전파 대상

O 내부: 각 실국

O 외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시군 상황실

※ 행정안전부 보고 착안사항

-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 재난 발생의 일시·장소와 재난의 원인
 -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 응급조치사항,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향후 조치계획 등

5. 유관기관

기 관 명	담당부서	전 화	FAX
전라남도 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전라남도 소방본부			
제31보병사단			
해군 제3함대사령부			
공군 제1전투비행단			
광주지방기상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KT전남법인시업단			
한국기스인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 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			

코드번호: 7-3

행동요령

조치목록 : 초기대응팀 및 재난종합상황실 가동

조치내용: 재난상황 수시보고 및 전파ㆍ공유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 한빛본부, 시군 상황실

1. 시기 : 매 1시간 마다

2. 보고내용

- O 재난개요 및 전개상황
- O 피해발생현황
- O 현장조치사항
- 3. 보고대상

○ 내부 : 사회재난과장 → 도민안전실장 → 도지사・부지사

조치목록 : 초기대응팀 및 재난종합상황실 가동 행동요령 코드번호: 7-4

조치내용: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요청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한빛원자력본부 시군 상황실

1. 필요자워 파악

O 긴급 구조구급 장비

- O 응급 복구 장비
- O 한빛원자력본부 비상대책실 지원요청 장비
- 전라남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시 필요장비
- 2. 인근 지자체 및 중앙기관 응원요청
 - O 비상계획구역 내 시군 보유한 자원 소진 · 부족 시 인근 시군에 응워 요청
 - O 전남도내 자원 소진·부족 시 중앙부처 및 인접 광역단체 자원 응워 요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응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 자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9조 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응원 을 요청할 수 있다.

조치목록 : 초기대응팀 및 재난종합상황실 가동 행동요령 코드번호: 7-5

조치내용: 상황판단회의 개최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한빛원자력본부, 시군 상황실, 소방본부

1. 회의주재 : 도민안전실장

2. 참석대상

O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팀장급 이상 관리자

3. 회의내용

- O 전라남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조기 발족 여부 결정
- O 한빛원전본부 피해복구 지원사항
- O 구조구급 지원사항
- O 유관기관 지원사항
- O 기타 필요한 사항

코드번호: 7-6

행동요령

조치목록: 초기대응팀 및 재난종합상황실 가동

조치내용 : 관계기관 대책 회의 준비 및 개최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원지력안전위원회, 소방본부, 시군 상황실

1. 회의시기 : 원자력안전위원회 요청 시

2. 회의주재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3. 회의방법 : 화상회의

4. 참석대상 : 도민안전실장

5. 회의내용

- O 한빛원자력본부 사고수습 및 피해복구 협조사항
- O 긴급구조구급에 관한 협조사항
- O 기타 사고수습에 필요한 사항

코드번호: 7-7 **행 동 요 령** 조치목록: **초기대응팀 및 재난종합상황실 가동** 조치내용: **재난상황 단계별 상황실 탄력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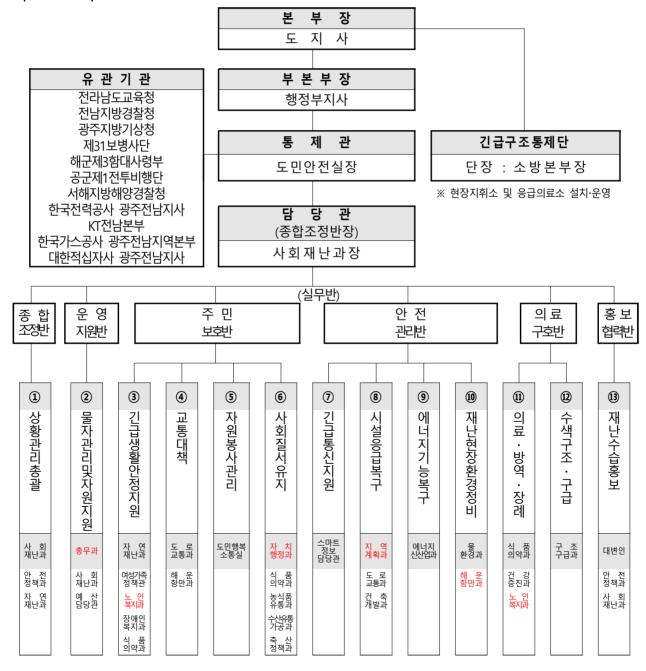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헌빛원자력본부 시군 상황실

1. 탄력운영 검토사항

- O 한빛원자력본부 백색비상 발령의 원인 유형에 따라 지역방사능방재 대책본부 조직일부를 청색비상 이전 조기 구성
 - 예)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 의료구호반

가. 조 직



나. 구 성 : 54명(도 26개 실과, 6개반 43명 / 11개 유관기관 11명)

조직명(인원)	협업기능	구 성			
본부장(1)		· 전라남도지사			
부본부장(1)		· 행정부지사			
통제관(1)		· 도민안전실장			
담당관(1)		· 사회재난과장			
긴급구조통제단(1)		· 소방본부장			
종합조정반(4)	∘ 상황관리 총괄	∘ 반장 : 사회재난과장 ∘ 반원 : 사회재난과,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운영지원반(4)	∘ 물자관리및자원지원	∘ 반장 : <mark>총무과장</mark> ∘ 반원 : <mark>총무과</mark> , 예산담당관실, 사회재난과,			
	∘ 긴급생활안정지원	· 반장 : 자치행정과장			
주민보호반(13)	∘ 교통대책	• 반원 : <mark>자치행정과</mark> , 자연재난과, 여성가 족 정책관, <mark>노인복</mark>			
	∘ 자원봉사관리	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의약과, 도민행복소통실, 도로교통과, 해운항만과, 농식품유통과, 수산유통가공			
	· 사회질서유지	과, 축산정책과			
	∘ 긴급통신지원				
	∘ 시설응급복구	· 반장 : 지역계획과장			
안전관리반(8)	· 에너지기능복구	반원: 지역계획과, 도로교통과, 건축개발과, 에너지신산업과, 물환경과, 해운항만과, 스마트정보담당관실			
	· 재난현장환경정비				
N= 기준비(F)	∘ 의료·방역·장례	○ 반장 : 식품의약과장			
의료구호반(5)	∘ 수색구조·구급	∘ 반원 : 식품의약과, 건강증진과, 소방본부(구조구급과), 노 인복지과			
홍보협력반(4)	· 재난수습홍보	∘ 반장 : 대변인 ∘ 반원 : 대변인실,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유관기관(11)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 31보병사단, 해군3함대사령부, 공군제1전투비행단, 광주 기상청,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사, 한국가스공사광주전 남지사, KT전남본부,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 			

조치목록 : 초기대응팀 및 재난종합상황실 가동 행동요령 코드번호: 7-8

조치내용: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

1. 대 상

O 현장방문 장·차관,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2. 보고자

O 도민안전실장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운영

3. 장 소

O 상황실 실무반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 공간 확보

조치목록 : 초기대응팀 및 재난종합상황실 가동 행동요령 코드번호: 7-9

조치내용: 지대본 가동 준비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스마트정보담 당관

협업기관 :

1. 시기 : 대책회의 결정 직후

2. 준비사항

O 비상요원의 응소대기

- O 지대본 운영 소요장비 동원
- O 비상연락망, 비상대응계획서 등 점검
- O 화상회의장비 준비

코드번호: 46-1 행동요령

조치목록 : 언론대응

조치내용: 위기경보전파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대변인실 협업기관: 연합정보센터, 언론사

1. 시기 : 비상 발령 접수 즉시

※ 백색비상시는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연합정보센터를 설치, 언론에 상황 공유

2. 전파 내용 : 백색비상 발령상황 전파

연합정보센터

III**>**

전라남도

...

시·군 유관기관

3. 유관기관 위기경보 전파

코드번호: 47-1,5 **행동요령** 조치목록: 언론대응

조치내용: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주관부서 : 대변인실

지원부서 : 사회재난과, 안전정책과 협업기관 : 연합정보센터. 언론사

1. 홍보(안) 작성

O 영광군 상황실에 설치된 연합정보센터로부터 관련내용을 받아 홍보(안) 작성

- 별지 제10호 "방사선비상발령에 따른 홍보문" 참조
- 홍보(안) 작성 후 연합정보센터와 협의
- 2.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
 - O 기자실
 - O 전남도청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게시
 - 중앙ㆍ지방 언론사, 유관기관, 상급기관 자료 배포
- 3. 언론 모니터링
 - 실시간 뉴스보도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지
 - O 주요 신문보도 내용 검토

4. 오보대응

- O 유언비어, 오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즉시 해명 및 브리핑(보도자료 등 활용) 실시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를 신속하게 확인
 - 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 요청
 - 보도 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바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조치목록: 언론대응 행동요령 코드번호: 47-2

조치내용: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주관부서 : 대변인실

지원부서: 사회재난과, 안전정책과 협업기관: 연합정보센터, 언론사

1. 보도자료 작성

O 배포일시, 담당자을 명확히 기입

O 사고상황을 요약 기술하고, 대응상황 및 수습복구 계획, 시민 당부사항 등을 작성

2. 배포

○ 언론의 마감시간(조간:오후5시, 석간:오전10시)이전 자료 배포

○ 방송은 반드시 화면 제작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O 필요시 주기적으로 배포가능하나 보도시점을 명확히 할 것

	ㅂ ㄷ 기 ㄹ	작 성	전라남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기기나다	上上 八五	담당자	홍보협력반 〇 〇 〇
전라남도	201ㅇ년 ㅇ월 ㅇㅇ일 조간부터	표·경 ^F	○○○○@korea.kr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00-000-0000

제목 : 원전 0호기 방사선 00비상 발령

- □ 금일(0000.0.00) 오전(오후) 00시 00분 경. OO시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 자력발전소 O호기 발전소 주요 냉각 펌프들에 전원을 공급하는 ..., 발전소 안전계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빛원자 력발전소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00:00 방사선 OO비상을 선포하였습니다.
- □ 발전소 측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 상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라남도, 영 광군, 고창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방사선비상 대책반을 설치, 운영하며 비상경계체제를 유지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 현장 방사능방재 지휘센터의 설치를 준비하는 등의 비상경계체제를 ...
- □ 향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연합정보센터를 통하여 공식으로 공표될 것 입니다.

제3절 비상 대응(청색비상)

가. 대응 지침

- O 위기경보: 심각단계
- O 신속한 접수 및 전파
- O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운영
- O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보호 조치 준비 및 실시

나. 지휘부 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도지사	[전라남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지휘] ○ 전라남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지휘 ○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을 위한 특별지시 ○ 주민보호조치 시행 준비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회의 주재 - 재난 상황 파악(재산피해, 인명피해 여부 등) - 이재민 구호소운영 지시 ○ 군 병력, 특수기동대 등 추가 진화인력 투입 여부 판단 ○ 범정부적 지원(인력, 장비)사항 요청 [필요시] ○ 도민 담화문 발표 및 재난사태 선포(중앙안전관리위원회) 건의 - 절차 : 도지사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도민안전실장	[전라남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 도지사(부지사) 보좌 ○ 재난피해 상황 파악 및 복구체계 가동 ○ 상황 및 조치사항 보고 ○ 지대본 조치내용 및 지원 필요사항 확인 ○ 주민보호조치 시행 준비 ○ 피해자 지원 및 복구범위 검토/보고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재난대응상황 브리핑

다.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

비상 대응

조치목록 : 청색비상 접수·전파·보고 행동요령 코드번호: 4-1

조치내용: 상황접수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한빛원자력본부

1. 접수 : 즉시

구 분	기 관	수 단	비고
발령	한빛원자력발전본부	ERIX시스템,	ᅯᄱᆔ사
접수	전라남도	유·무선, FAX	청색비상

- O 사회재난과
- O 한빛방재전용선
- O 재난안전상황실
- O 119종합상황실
- O 당직실

☞ 상황 접수자는 즉시 사회재난과 원전안전팀장 및 담당자에게 내용 통보

2. 접수 시 확인사항

- O 접수상황
 - 접수시간, 접수자, 신고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등)
- O 이상상황
 - 사고개요(발생일시, 장소, 원인)
 - 인명피해 상황, 한빛원전 조치사항, 방사능누출 가능성 여부

조치목록: **청색비상 접수·전파·보고** 행동요령 코드번호: 4-2

조치내용: 상황파악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한빛원자력

1. 대상 기관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O 한빛원자력본부 비상대책실

3. 확인 요령

-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AtomCARE)
- O 유, 무선 통신망(비상연락망 참조)
 - 영광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한빛원자력본부 방사선비상대책본부

3. 확인사항

O 발생일시, 장소, 현상 및 원인, 현장조치 사항(방사선 방재 측면, 부상자 여부), 비상발령으로 확대될 가능성

조치목록: **청색비상 접수·전파·보고** 행동요령 코드번호: 5-1

조치내용: 상황보고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한빛원자력본부

1. 보고시간 : 최단시간

O 한빛원자력발전소는 비상발령 즉시 최초 구두·서면보고, 이후 비상상황에 대해 1시간마다 서면보고

2. 보고대상

○ 내부 : 사회재난과장 → 도민안전실장 → 도지사・부지사

O 외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3. 보고내용

- O 재난발생의 일시, 장소와 원인, 피해내용, 응급조치 사항,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향후조치계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O 한빛원전본부 최초보고, 매 1시간 마다 후속 보고내용 활용

조치목록 : 청색비상 접수·전파·보고 행동요령 코드번호: 5-2

조치내용 : 상황전파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군상황실

1. 전파시간 : 최단시간

2. 전파대상

O 내부: 각 실국

O 외부: 시군 상황실, 유관기관

- 3. 전파 내용
 - O 발생일자 및 시간
 - O 발생장소 (호기, 위치)
 - O 현상 및 원인
 - O 현장조치 사항 (방사선 방호 측면, 부상자 여부)
 - O 비상발령으로 확대될 가능성
 - O 기타 특이사항
- 3. 전파 요령
 -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AtomCARE)
 - O FAX 등 유선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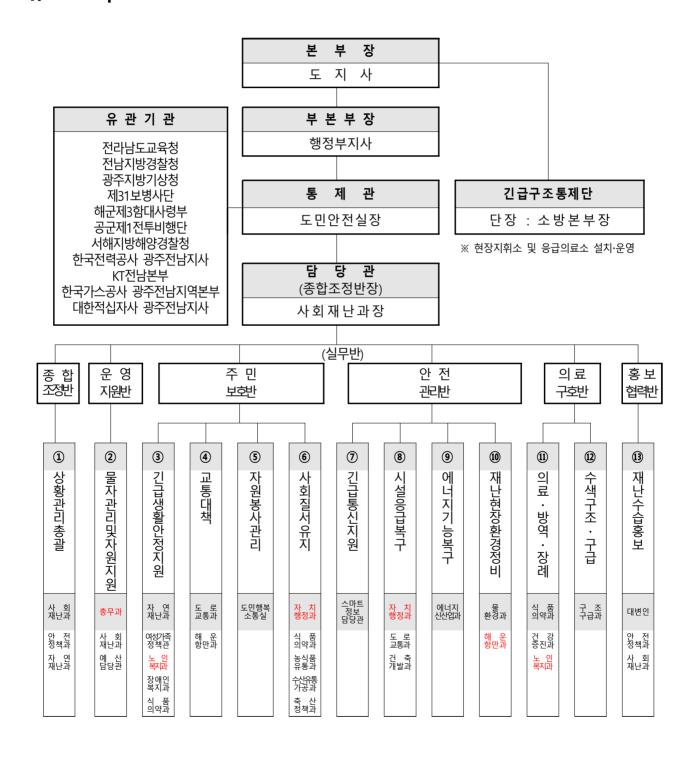
코드번호: 8-1 **행 동 요 령** 조치목록: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대본) 운영 조치내용: 지대본 설치 및 가동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협업기관

※ 청색비상 발령시 가동, 적색비상 발령시 확대운영

1. 조 직



2. 구 성 : 54명(도 26개 실과, 6개반 43명/11개 유관기관 11명)

조직명(인원)	협업기능	구 성
본부장(1)		· 전라남도지사
부본부장(1)		· 행정부지사
통제관(1)		· 도민안전실장
담당관(1)		• 사회재난과장
긴급구조통제단(1)		· 소방본부장
종합조정반(4)	∘ 상황관리 총괄	∘ 반장 : 사회재난과장 ∘ 반원 : 사회재난과,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운영지원반(4)	· 물자관리및자원지원	∘ 반장 : <mark>총무과장</mark> ∘ 반원 : <mark>총무과</mark> , 예산담당관실, 사회재난과,
	· 긴급생활안정지원	· 바장 : 자치행정과장
주민보호반(13)	∘ 교통대책	• 반원 : <mark>자치행정과</mark> , 자연재난과, 여성가 족 정책관, <mark>노인복</mark>
	· 자원봉사관리	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의약과, 도민행복소통실, 도로교통과, 해운항만과, 농식품유통과, 수산유통가공
	· 사회질서유지	과, 축산정책과
	∘ 긴급통신지원	
	∘ 시설응급복구	· 반장 : 자치행정과장
안전관리반(8)	· 에너지기능복구	반원: 자치행정과, 도로교통과, 건축개발과, 에너지신산업과, 물환경과, 해운항만과, 스마트정보담당관실
	• 재난현장환경정비	
A) = = = v) (E)	∘ 의료·방역·장례	○ 반장 : 식품의약과장
의료구호반(5)	∘ 수색구조·구급	∘ 반원 : 식품의약과, 건강증진과, 소방본부(구조구급과), <mark>노</mark> <mark>인복지과</mark>
홍보협력반(4)	∘ 재난수습홍보	∘ 반장 : 대변인 ∘ 반원 : 대변인실,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유관기관(11)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 31보병사단, 해군3함대사령부, 공군제1전투비행단, 광주 기상청,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사, 한국가스공사광주전 남지사, KT전남본부,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

코드번호: 8-2

행동요령

조치목록: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대본) 운영

조치내용: 지대본 실무반 편성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협업기관

7	분	임무 및 역할
본 부 장((도 지 사)	전라남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비상대응활동 총괄
부본부장(행정부지사)		○ 현장지휘센터 파견, 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임무 수행
통제관(도	-민안전실장)	○ 방사능 비상상황 통제
담당관(시	·회재난과장)	○ 실무반 상황 보고·전파 총괄
긴급구조통제]단(소방본부장)	○ 화재진압, 긴급의료구호, 주민보호 비상대응활동
조하고거비	사회재난과	 각급 대책본부 비상연락·조정, 현장대응 상황 관리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및 비상연락·조정 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운영 정부 및 상급기관 지시사항 관리 등 방재요원, 유관기관 등 비상상황 전파
종합조정반 -	안전정책과	○ 대책본부 지시사항 전달 및 시군 조치결과 확인○ 사고 상황관리 및 문서관리○ 민방위대 동원 및 군부대 지원 요청
	자연재난과	○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의 복합상황 대응·수습
	총무과	○ 방재요원 비상연락망 점검, 소집, 인원 점검
운영지원반	사회재난과	○ 비상대응활동 필요 자원 수배·공급 등 상황대응 ○ 행동매뉴얼, 각종 비상대응 활동자료 파악 배포
	예산담당관	ㅇ 긴급예산 확보 및 정부예산지원 요청 등
	자치행정과	ㅇ 질서유지 및 주민보호, 대한적십자 협업 지원
	도민행복소통실	ㅇ 자원봉사자 지원 및 배치 관리, 민원관리
	자연재난과	구호소 운영관리(음식, 생필품 공급) 및 현장 구호센터 설치 지원이재민 현황 파악 및 가족 찾기 지원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노인복지과	ㅇ 노인 대피대책 및 보호시설 보호 상황대응
	장애인복지과	ㅇ 장애인 대피대책 및 보호시설 보호 상황대응
주민보호반	식품의약과	ㅇ 식품오염검사 및 음식물 섭취제한 등 식품안전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 보육아동, 다문화 등 특수계층 대피 및 보호조치
	도로교통과	ㅇ 오염지역 우회로 설정 및 주민 수송대책 수배 지원
	해운항만과	ㅇ 선박통제 및 내항 질서유지 지원 상황대응
	농식품유통과	ㅇ 농식품 유통통제 지원
	수산유통가공과	ㅇ 수산물 유통통제 지원
	축산정책과	○ 축산물 유통통제 지원

7	· 분	임무 및 역할
	스마트정보담당관	○ 대책본부 통신설비 및 긴급통신복구 지원 관리
	지역계획과	○ 현장응급복구 총괄, 인력·자원 수배 및 공급
	도로교통과	○ 도로·교량 복구
안전관리반	건축개발과	○ 붕괴 건축물 복구, 이재민 긴급주거지원
	에너지신산업과	o 에너지 수급대책 수립 추진
	물환경과	ㅇ 재난 폐기물 및 제염 폐기물 처리 지원
	해운항만과	○ 해양오염검사, 해양오염 제염(선박 등) 지원
	식품의약과	○ 구호소 현장진료소 운영○ 갑상선 방호약품 및 의약품 확보 지원○ 비상진료병원 운영관리 지원
의료구호반	건강증진과	ㅇ 구호소 방역 및 보건활동(보건소 등) 지원
	노인복지과	○ 사망자 장례지원 및 합동분향소 운영
	구조구급과	○ 긴급구조·구급활동 대응, 구조차량 배치 및 운용 ○ 공중수색 지원 및 비상헬기 운용 등
· 홍보협력반	대변인실	○ 비상상황 및 주민보호 조치사항 대주민 홍보○ 주민행동요령 홍보 및 주민 유도방송 지원○ 보도자료 배포, 취재 대응, 언론분석, 유언비어 통제
	안전정책과	o 민방위 비상경보 전파
	사회재난과	○ 재난방송(DMB) 및 재난문자(CBS) 전파
	전남교육청	○ 학교(학생) 대피·소개 및 수송대책 확보 ○ 학생 보호대책 추진
	전남경찰청	○ 출입통제소 운영 및 교통통제, 소개차량 에스코트 ○ 소개지역, 구호소 등 치안(질서) 유지 및 순찰활동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 해상안전(질서) 유지 및 어선·선박 통제 ○ 환경방사선 탐사(해상) 및 오염방제 지원
	제31보병사단	제독소 운영 및 화학차 등 장비 지원방사능 오염환자 분류 및 제염활동 지원환경방사선 탐사(육상) 병력 및 장비지원
	해군3함대 사령부	○ 해상 오염방제 및 주민대피 해상수송 지원
유관기관	공군 제1전투비행단	○ 제독소 운영 및 화학차 등 장비 지원○ 방사능 오염환자 분류 및 제염활동 지원○ 환경방사선 탐사(공중) 병력 및 장비지원
	광주기상청	ㅇ 국지기상 및 예보 정보 제공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사	○ 긴급 전력복구 지원 및 수급 대책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사	○ 긴급 가스복구 지원 및 수급 대책
	KT전남본부	○ 긴급 통신복구 지원 및 구호소 등 통신 설비 지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 이재민 구호활동 상황 대응 ○ 소개주민 급식 지원
	0 1 6 6 1 1	○ 구호소 봉사활동 및 구호물품 지원

코드번호: 8-3

행동요령

조치목록: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대본) 운영

조치내용: 지대본 운영 및 지원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협업기관

1. 주민보호조치 계획 수립 및 통보

- 2. 주민대피 · 소개 준비
- 3. 구호소 운영 준비
- 4. 식수, 농수축산물 섭취, 유통제한 준비
- 5. 비상대응물품 및 장비 확충 준비
- 6. 환경방사능 탐사활동 지원 준비
- 7. 긴급 의료지원 대책 준비
- 8. 사고 대응 및 수습 대책 협의
- 9. 상급기관 응원요청 및 업무지원
- 10. 긴급구조 및 응급복구 상황종합
- 11. 협업 기능별 조치사항 총괄
- 12. 유관기관 협업 총괄
- 13. 사고수습 총괄 및 사후대책 강구

코드번호: 10-1

행동요령

조치목록: 대민지원

조치내용: 민원접수 창구 설치 및 운영

주관부서: 도민행복소통실

지원부서 :

협업기관: 지자체 민원부서

1. 장소

- O 도 및 시·군 청사 내 민원실 활용
- O 민원접수 창구 명패·배너 등 설치

2. 인력배치

O 도민행복소통실 및 시·군 민원실 인원 중심

3. 운영방법

- O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창구에서 해결, 불가피한 경우만 이첩
 -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종합안내서」를 비치하여 One-Stop 해결
 - 전기, 가스, 통신 등 라이프라인은 안전관리반에 협조 요청

코드번호 : 11-3 **행동 요 령** 조치목록 : **이재민 구호**

조치내용: 이재민 지역 구호센터 설치

주관부서: 자연재난과

자치행정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

지원부서: 성가족정책관 식품의약과 건강증진과 도

민행복소통실

그, 지자체, 전라남도교육청, 대한적십자,

협업기관: 시시시,

1. 시기

O 설치준비 : 청색비상 발령 즉시

O 설치·운영 : 적색비상 발령 즉시

2. 구성 : 시·군별 구성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7조

- O 본부장(단체장)
- O 총괄관(부단체장)
- 조정과(구호관련국장)
- O 통제관(과장)
- O 실무반(이재민구호반, 의료지원반, 전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
- 3. 임무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8조
 - O 임시주거시설. 급식 및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 구호상황 지원
 - O 재해구호 관련 단체에 구호물자·인력·장비 등 지원 요청
 - 응급의료기관, 보건소를 통한 의료지원 및 민간의료단체의 의료지원 요청
 - 재해지역에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실시
 - O 재해지역의 위생점검, 식중독 예방 및 급식관리 등 오염 예방조치

코드번호: 11-4 **행동 요 령** 조치목록: 이재민 구호

주관부서: 자연재난과

자치행정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

지원부서: 성가족정책관, 식품의약과, 건강증진과, 도

민행복소통실

협업기관: 시시시,

1. 시기

O 설치준비 : 청색비상 발령 즉시

O 설치·운영: 적색비상 발령 즉시

2. 설치준비 요령

재난 피해지역 풍향에 따른 주민의 소개경로 및 지정 구호소 파악

- O 학교 체육관 등 구호소 관리상태 파악 및 개방 준비 지시
 - 지자체(광주, 목포,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신안), 교육청에 지시
 - 소개 대상 인구에 따라 적정 수의 구호소 지정 유도
- O 이재민 생활 필수품(구호 물품) 확보 현황 파악
 - 재난 피해지역 인근 업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
- O 비상진료센터 설치 준비(지역 보건소)
 - 위생·의료서비스 및 심리치료 등

코드번호: 11-6

행동요령

조치목록 : **이재민 구호** 조치내용 : **이재민 구호**

주관부서 : 자연재난과

자치행정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

지원부서: 성가족정책관 식품의약과 건강증진과 도

민행복소통실

협업기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 이재민 구호 계획 수립 및 준비

1. 구호방법(재해구호법 제4조)

- O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학교, 체육관 또는 천막제공
- O 급식(식품) 제공 : 학교 급식시설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급식차량 동원 제공(필요시 식당지정 또는 식비 지원)
 - 쌀, 부식 등은 예비비, 재난기금 등을 활용 구매
- O 의류, 침구 등 생활필수품 제공 : 응급구호 및 취사구호세트 제공
 - 자체보유물량 부족 시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즉시 조달
- 의료서비스의 제공 : 구호소 또는 거점별 응급진료소 설치
- O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 구호소 및 광역방역 활동
 - 필요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활동
- O 위생지도 : 식중독 등 예방 등 급식관리
- 장사(葬事)의 지원 : 장례비 지원 및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 심리회복의 지원 : 광주·전남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역병원, 대학 지원을 받아 구호소 내 또는 거점 상담소 설치

코드번호: 15-1~3

행동요령

조치목록: 긴급통신지원 및 복구요청

조치내용: 긴급통신지원 및 복구요청

주관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지원부서: 자치행정과

협업기관: KT전남본부

1. 재난현장 긴급통신 지원

현장 통신지원을 위한 KT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현장통신 지원 인력 파악

사고지역 이동통신 전화폭주 장애대비 → 이동통신사에 이동기지국 설치 등 대책강구

2.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통신설비 지원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에 따른 통신 수요파악 → 설치장소, 수요량 (유선, 인터넷, FAX 등)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간 통신회선 구성요청(KT)

3. 추가 통신지원 파악 및 지원지속

유가족 대책상황실, 자원봉사 지원 등 통신수요 예상

- 유선전화 설치 예상

코드번호: 16-2

행동요령

조치목록: 시설응급복구

조치내용: 응급복구 지원 준비 요청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지원부서: 도로교통과, 건축개발과

육군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협업기관: 공군제1전투비행단,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필요자원 파악

O 현장 필요자원 파악 및 협업기관 공조체계 구축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KT 상황전파 및 비상연락망 유지

O 초기에는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민간기관·단체에 자원응원 요청

2. 인근지자체 및 중앙기관 응원요청

O 관할구역 내 시군구가 보유한 자원 소진·부족시 인근 시군구 및 중앙 기관에 응원요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응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9조 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코드번호: 16-3

행동요령

조치목록: 시설응급복구

조치내용: 응급복구 장비 보유현황 파악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지원부서: 사회재난과, 도로교통과, 건축개발과

육군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협업기관: 공군제1전투비행단,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파악방법

O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이용

O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 협조요청

2. 파악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3조

- O 포대류·묶음줄 등 수방자재
- O 시멘트·철근·하수관 및 강재 등 건설자재
- O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 O 자재·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 O 불도저·굴삭기 등 건설장비
- O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 O 손전등·축전기·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한 소형장비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 :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 대상 자원

조치목록: 시설응급복구 행동요령 코드번호: 16-4~6

조치내용: 응급복구 지원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지원부서: 도로교통과, 건축개발과, 안전정책과

육군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협업기관: 공군제1전투비행단,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응급복구 소요 인력 및 장비 파악

O 방사능오염 제염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장비 포함

2. 인근 지자체 및 유과기관 지원 요청

O 제염 지원 인력 및 시설복구 장비 등

2. 민방위대원 동원, 의용소방대 등 자원봉사자 지원

- 민방위대 동원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절차시행
- O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자원봉사 요청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인력 · 장비 · 자재 등의 소	성명(회사명	녕)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유자	주소		
	일시		
	장소		
응원 요청 사항	응원 요청 내용		
	요청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 관리자원을 응원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직인

유의사항

응원 요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코드번호: 20-1

행동요령

조치목록: 방재자원 확보 및 수요파악

조치내용: 방재자원 확보현황 및 수요파악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예산담당관, 총무과

협업기관: 지자체, 경찰청, 해경청, 육·해·공군, 민

업업기관· 방위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

O 현장 필요자워 파악 및 협업기관 공조체계 구축

- 소방, 군부대 등 상황전파 및 비상연락망 유지

○ 초기에는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민간 기관·단체에 자원응원 요청

2. 인근지자체 및 중앙기관 응원요청

- O 관할구역 내 시군구가 보유한 자원 소진·부족시 인근 시군구에 응원 요청
- O 운영지원반은 시군구간 자원 응원·조정, 중앙기관 응원요청

코드번호: 21-2,5

행동요령

조치목록: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조치내용: 군부대 및 유관단체 인력·장비 동원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예산담당관, <mark>총무과</mark>, 안전정책과, <mark>자치</mark>

행정과

협업기관: 지자체, 경찰청, 해경청, 육·해·공군, 민

방위대

1. 군 인력, 장비 동원을 위한 군부대 비상연락망 가동

○ 육군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공군제1전투비행단

2. 민방위대원 소집 준비

O 시·군 민방위대원 소집 명령 발동 준비

3. 유관단체 인력 동원을 위한 비상연락망 가동

O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동원의 요건》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동원의 절차》

O 민방위대 동원 : 민방위기본법 제26조

○ 군부대 지원요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제1항3호

○ 협업기관 지원 요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제1항2호

코드번호: 21-3

행동요령

조치목록: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 조치내용:

력, 자재 동원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예산담당관, 총무과, 안전정책과

협업기관: 지자체, 경찰청, 해경청, 육·해·공군, 민 방위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필요자워 파악 및 지워

O 현장 필요자원 파악 및 협업기관 공조체계 구축

- 군. 경. 소방 등 상황전파 및 비상연락망 유지

- 방사능 방재장비 및 방사능 전문 기술·인력 지원 요청(KINS)

O 초기에는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민가기관·단체에 자원응원 요청

2. 인근지자체 및 중앙기관 응원요청

O 관할구역 내 시군구가 보유한 자원 소진·부족시 인근 시군구에 응워요청

O 운영지원반은 시군구간 자원 응원·조정, 중앙기관 응원요청

코드번호: 21-7

행동요령

조치목록: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조치내용: 방재자원 동원 자료 관리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예산담당관, <mark>총무과</mark>, 안전정책과, <mark>자치</mark>

행정과

협업기관: 지자체, 경찰청, 해경본부, 육·해·공군,

^{1선 ·} 민방위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자원동원 현황

○○ 사고현장 자원동원 현황

단체명	출동일시 (현장도착)	철수일시	출동 장 인원	지휘관 (성명)	연락관 (성명)	역할	비고

2. 자원배치 현황(현장투입)

○○ 사고현장 자원배치 현황[현장투입]

연번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인원	배치장소	투입시간	철수시간	비고

코드번호: 21-8

행동요령

조치목록: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조치내용: 응급복구 수습 예산 지원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지원부서: 사회재난과, 총무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지자체,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1. 예산확보

- O 시군구 자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활용
- 道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지원

《재난관리기금 용도 개선 》

- ❖ 재난안전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개정(2016.1.7.), 시행(2017.1.8.)
 -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 가능

2. 예산지원요청

O 시·군 자체 예산확보 및 道 예산 확보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우, 중 앙부처(행정안전부, 원안위) 등에 지원 요청

재원	소관기관	관련규정	비고
재난관리기금	자연재난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반회계(예비비)	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	
국고보조금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손해배상금	한수원(주)	원자력손해배상법	

코드번호: 23-2~3

행동요령

조치목록: **교통상황파악**

조치내용: 재난지역 육·해·공 교통상황 모니터링

주관부서 : 도로교통과 지원부서 : 해운항만과

협업기관: 경찰청, 해경청, 육·해·공군

1. 재난발생 주변지역 교통상황 파악

- O 재난·사고 등에 의한 단선구간 파악
- O 주민 대피경로 및 혼잡 예상구간 파악
- O 재난지역 진·출입로 파악 및 우회로 설정
- O 재난지역 인근 해역 선박 운항 파악 및 통제
- 2. 교통・출입 통제를 위한 군・경 동원 가능 인력 및 장비 협조 요청

코드번호: 24-5

행동요령

조치목록: 대체교통수단 마련

조치내용: 인력 및 자원 수송 지원

주관부서 : 도로교통과 지원부서 : 해운항만과

협업기관: 지자체, 경찰청, 육·해·공군, 민방위대

1. 인력 및 자원 수송 소요 차량 대수 파악

- O 방사능 비 오염 지역으로의 인력 및 자원 수송 소요 파악
- O 주민보호, 구호, 응급복구 등 구분하여 산출
- 2. 차량 보유 및 운송단체 현황 관리, 지원 요청
 - O 주민보호, 구호 관련 우선 지원 요청
 - O 주민수송수단 현황 부록 참조

코드번호: 26-2~7

행동요령

조치목록: 의료 지원

조치내용: 의료 인력, 물품 및 심리치료 지원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지원부서: 식품의약과, 구조구급과

협업기관: 소방서, 보건소,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열업기관 . 광역응급의료지원센터

1. 의료 인력 및 물품 파악(부록 참조)

- O 재난발생 주변지역 병·의원 및 인력 파악
- O 현장 응급의료소 지원 준비
- O 보건소 인력·의약품 파악
- O 전남 광역응급의료지원센터 상황 전파 및 환자 이송 지원 요청
 - 목포한국병원
- O 방사선비상진료병원 상황 전파 및 환자 이송 지원 요청
 - 영광기독병원, 영광종합병원, 국군함평병원, 전남대학교병원
- O 환자이송차량(앰뷸런스 등) 확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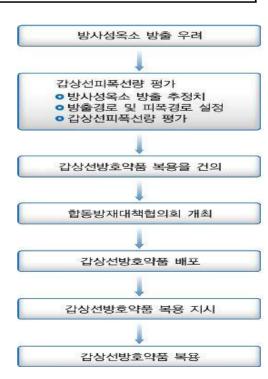
- 2.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구성 및 운영 협조
- 3. 재난 심리치료 지원 준비
 - O 대상 : 재난으로 인한 가족, 목격자,

구조자 등

O 내용 : 현장 응급의료소,

보건소를 통한 심리치료

- 4.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 준비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결정에 따라 시·군 보건소에 보관중인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 및 복용 지시



코드번호: 28-1~4

행동요령

조치목록 : 응급치료

조치내용: 방재인력 피폭저감 및 응급처치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지원부서: 식품의약과, 구조구급과

협업기관: 소방서, 보건소, 합동방시선비상진료센터,

업업기관 . 광역응급의료지원센터

1. 방재 인력 응급진료 비상체계 운영

O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주관 현장 방사선 비상진료소 가동

O 방사선비상진료병원 내 방사능 오염환자 전용 치료실 가동

- 영광기독병원, 영광종합병원, 국군함평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방재 인력 제염 준비
 - O 합동 방사선 비상진료센터, 구호소 및 출입통제소 제염시설 이용

코드번호: 30-1~17

행동요령

조치목록 : 방재활동

조치내용: 방사능 오염 제염 및 방재활동 지원

주관부서 : 물환경과

지원부서 : 지역계획과, 도로교통과, 건축개발과,

해운항만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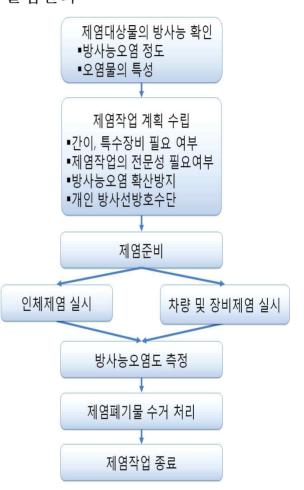
협업기관: 기상청, 경찰청, 소방서, 육·해·공군,

민방위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방사능 오염 집중 지역에 대한 제염 및 출입관리

O 환경방사선 감시현황 상시 확인

- 2. 방재 인력 물품 지원 준비
 - O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방사능 방재 전문 인력·장비 지원요청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심으로 제염계획 수립
 - O 육군 제31보병사단,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공군 제1전투비행단, 민방 위대 인력·장비 지원 요청을 위한 비상연락망 가동



코드번호: 40-1~4 **행동 요 령** 조치목록: **주민대피**

조치내용: **인력·장비 점검**

주관부서: 도로교통과

자치행정과, 여성가족정책관, 노인

지원부서: 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자연재난과,

해운항만과

협업기관: 지지체, 소방서, 경찰청, 해경청, 육해·공군, 민

법기원 . 방위대

1.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지역주민 대피준비

O 백색비상 발령시 군 및 읍·면 담당공무원은 주민대피 준비

- 소개경로 및 구호소 확인, 비상경보 방송문안 점검, 마을이장단 등 지도자단체 비상연락망 유지

2. 필요자원 파악

- O 현장 필요자원 및 동원 인력 파악
 - 방송 시설 및 방송 차량, 주민 대피용 차량 등
- 초기에는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민 간기관·단체에 자원응원 요청
- 3. 인근지자체 및 중앙기관 응원요청
 - O 관할구역 내 시군구가 보유한 자원 소진·부족시 인근 시군구에 응 워요청
 - O 주민보호반, 안전관리반은 시군구간 자원 응원·조정, 중앙기관 응 원요청
- 4. 주민대피 임무 분담
 - O 현장 주민대피 업무 총괄: 긴급구조통제단 휘하 현장 소방서
 - O 비상경보 및 방송 등 주민 안내 : 읍·면 담당공무원
 - 주민대피 실시 : 군, 경, 소방, 민방위대원
 - O 주민수송차량 에스코트 : 경찰청
 - O 대피(소개) 경로 통제 : 경찰청

코드번호: 46-1

행동요령

조치목록: 재난방송

조치내용: 위기경보전파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대변인실 협업기관: 연합정보센터, 언론사

1. 시기 : 비상 발령 접수 즉시

- 2. 위기경보 시설
 - O 민방위경보시설
 - O 한빛원자력본부 비상경보시설
 - O 시군 재난방송망 및 마을방송
 - O 가두방송 차량을 이용한 확성기 방송



- 3. 전파 내용 : 비상 상황전파 및 주민행동요령 홍보
 - O 청색비상
 - 사고 확대에 대비하여 대피 · 소개 등 주민보호조치 준비 안내
- 4. 유관기관 위기경보 전파

O

코드번호: 46-2 행동요령

조치목록: 재난방송

조치내용: 재난방송(대응 및 수습상황, 위기경보)

주관부서: 대변인실

지원부서: 사회재난과, 안전정책과 협업기관: 연합정보센터, 언론사

1. 방송(안) 작성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내 연합정보센터로부터 관련내용을 받아 사고대응 및 수습상황을 중심으로 방송(안) 작성

- O 청색비상은 사고 영향이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됨을 강조
- O 방송(안) 작성 후 연합정보센터와 협의
- 2.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
 - O 기자실
 - O 전남도청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게시
 - 중앙 · 지방 언론사, 유관기관, 상급기관 자료 배포

코드번호: 46-3 **행동요령**

조치목록: 재난방송

조치내용: 국민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홍보

주관부서: 안전정책과

지원부서: 사회재난과, 대변인실 협업기관: 연합정보센터, 언론사

1. 홍보(안) 작성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내 연합정보센터로부터 관련내용을 받아 홍보(안) 작성

- 별지 제10호 "방사선비상발령에 따른 홍보문" 참조
- 홍보(안) 작성 후 연합정보센터와 협의

2. 이용설비

- O 민방위경보시설
- O 한빛원자력본부 비상경보시설
- O 시군 재난방송망 및 마을방송
- O 가두방송 차량을 이용한 확성기 방송

코드번호 : 47-1,5 **행동 요 령** 조치목록 : 언론대용

조치내용: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주관부서 : 대변인실

지원부서: 사회재난과, 안전정책과

협업기관: 연합정보센터, 언론사

1. 언론 모니터링

O 실시간 뉴스보도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지

O 주요 신문보도 내용 검토

2. 오보대응

- O 유언비어, 오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즉시 해명 및 브리핑(보도자료 등 활용) 실시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를 신속하게 확인
 - 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 요청
 - 보도 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바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 특히, 재난상황에 대한 오보는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혼란을 야기함

코드번호: 47-2

행동 요 경 조치목록 : 언론대용

조치내용: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주관부서 : 대변인실

지원부서: 사회재난과, 안전정책과 협업기관: 연합정보센터, 언론사

1. 보도자료 작성

O 배포일시, 담당자을 명확히 기입

O 사고상황을 요약 기술하고, 대응상황 및 수습복구 계획, 시민 당부 사항 등을 작성

2. 배포

O 언론의 마감시간(조간:오후5시, 석간:오전10시)이전 자료 배포

O 방송은 반드시 화면 제작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O 필요시 주기적으로 배포가능하나 보도시점을 명확히 할 것

	보도자료	작 성	전라남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전라남도	모고자료	담당자	홍보협력반 〇 〇 〇
	201ㅇ년 ㅇ월 ㅇㅇ일 조간부터		○○○○@korea.kr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00-000-0000

제목 : 원전 0호기 방사선 00비상 발령

- □ 금일(0000.0.00) 오전(오후) 00시 00분 경, OO시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 자력발전소 O호기 발전소 주요 냉각 펌프들에 전원을 공급하는 ..., 발전소 안전계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빛원자 력발전소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00:00 방사선 OO비상을 선포하였습니다.
- □ 발전소 측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 상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라남도, 영 광군, 고창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방사선비상 대책반을 설치, 운영하며 비상경계체제를 유지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 현장 방사능방재 지휘센터의 설치를 준비하는 등의 비상경계체제를 ...
- □ 향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연합정보센터를 통하여 공식으로 공표될 것 입니다.

제4절 비상 대응(적색비상)

가. 대응 지침

- O 위기경보: 심각단계
- O 신속한 접수 및 전파
- O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운영
- O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보호 조치 준비 및 실시

나. 지휘부 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도지사	[전라남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지휘] ○ 전라남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지휘 ○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을 위한 특별지시 ○ 주민보호조치 시행 준비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회의 주재 - 재난 상황 파악(재산피해, 인명피해 여부 등) - 이재민 구호소운영 지시 ○ 군 병력, 특수기동대 등 추가 진화인력 투입 여부 판단 ○ 범정부적 지원(인력, 장비)사항 요청 [필요시] ○ 도민 담화문 발표 및 재난사태 선포(중앙안전관리위원회) 건의 - 절차 : 도지사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도민안전실장	[전라남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 도지사(부지사) 보좌 ○ 재난피해 상황 파악 및 복구체계 가동 ○ 상황 및 조치사항 보고 ○ 지대본 조치내용 및 지원 필요사항 확인 ○ 주민보호조치 시행 준비 ○ 피해자 지원 및 복구범위 검토/보고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재난대응상황 브리핑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 다.

비상 대응

조치목록: 적색비상 접수·전파·보고 행동요령 코드번호: 4-1

조치내용: 상황접수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 한빛원자력본부

1. 접수 : 즉시

구 분	기 관	수 단	비고
발령	한빛원자력발전본부	ERIX시스템,	적색비상
접수	전라남도	유·무선, FAX	실실되었

- O 사회재난과
- O 한빛방재전용선
- O 재난안전상황실
- O 119종합상황실
- O 당직실

☞ 상황 접수자는 즉시 사회재난과 원전안전팀장 및 담당자에게 내용 통보

2. 접수 시 확인사항

- O 접수상황
 - 접수시간, 접수자, 신고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등)
- O 이상상황
 - 사고개요(발생일시, 장소, 원인)
 - 인명피해 상황, 한빛원전 조치사항, 방사능누출 가능성 여부

조치목록: **적색비상 접수·전파·보고** 행동요령 코드번호: 4-2

조치내용: 상황파악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한빛원자력

1. 대상 기관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O 한빛원자력본부 비상대책실

3. 확인 요령

-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AtomCARE)
- O 유, 무선 통신망(비상연락망 참조)
 - 한빛원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한빛원자력본부 방사선비상대책본부

3. 확인사항

O 발생일시, 장소, 현상 및 원인, 현장조치 사항(방사선 방재 측면, 부상자 여부), 비상발령으로 확대될 가능성

조치목록: **적색비상 접수·전파·보고** 행동요령 코드번호: 5-1

조치내용: 상황보고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한빛원자력본부

1. 보고시간 : 최단시간

O 한빛원자력발전소는 비상발령 즉시 최초 구두·서면보고, 이후 비상상황에 대해 1시간마다 서면보고

2. 보고대상

○ 내부 : 사회재난과장 → 도민안전실장 → 도지사・부지사

O 외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3. 보고내용

O 재난발생의 일시, 장소와 원인, 피해내용, 응급조치 사항,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향후조치계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4조)

O 한빛원자력본부 최초보고, 매 1시간 마다 후속 보고내용 활용

조치목록: 적색비상 접수·전파·보고 행동요령 코드번호: 5-2

조치내용: 상황전파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군상황실

1. 전파시간 : 최단시간

2. 전파대상

O 내부: 각 실국

O 외부: 시군 상황실, 유관기관

- 3. 전파 내용
 - O 발생일자 및 시간
 - O 발생장소 (호기, 위치)
 - O 현상 및 원인
 - O 현장조치 사항 (방사선 방호 측면, 부상자 여부)
 - O 비상발령으로 확대될 가능성
 - O 기타 특이사항
- 3. 전파 요령
 - O 국가방사능방재대응시스템
 - 접속주소 : http://erix.kins.re.kr
 - O FAX 등 유선망

코드번호: 8-1 **행동요령**

조치목록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대본) 운영

조치내용: 지대본 설치 및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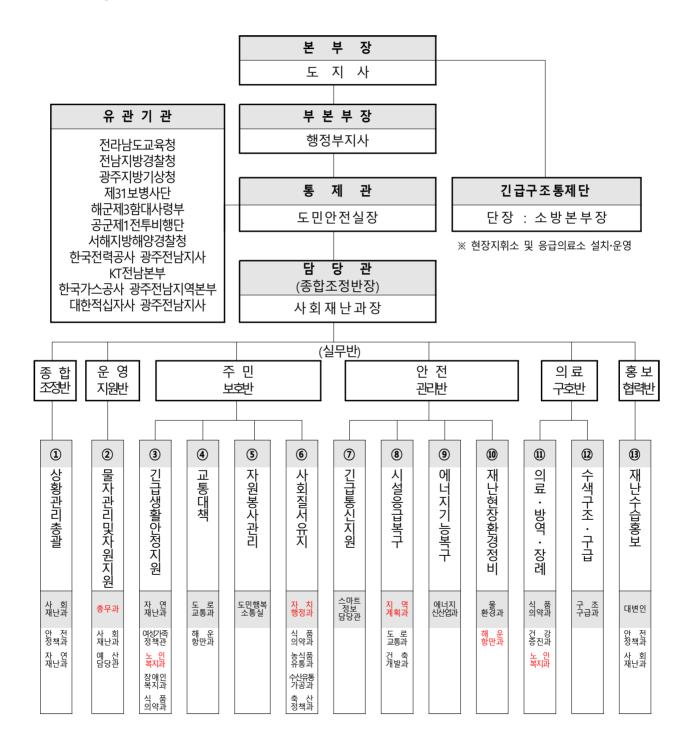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

※ 청색비상 발령시 가동, 적색비상 발령시 확대운영

1. 조 직



2. 구 성 : 54명(도 26개 실과, 6개반 43명/11개 유관기관 11명)

조직명(인원)	협업기능	구 성
본부장(1)		• 전라남도지사
부본부장(1)		· 행정부지사
통제관(1)		· 도민안전실장
담당관(1)		· 사회재난과장
긴급구조통제단(1)		• 소방본부장
종합조정반(4)	∘ 상황관리 총괄	∘ 반장 : 사회재난과장 ∘ 반원 : 사회재난과,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운영지원반(4)	∘ 물자관리및자원지원	 반장 : 총무과장 반원 : 총무과, 예산담당관실, 사회재난과,
	∘ 긴급생활안정지원	· 반장 : 자치행정과장
주민보호반(13)	∘ 교통대책	• 반원 : <mark>자치행정과</mark> , 자연재난과, 여성가족정책관, <mark>노인복</mark>
	· 자원봉사관리	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의약과, 도민행복소통실, 도로교통과, 해운항만과, 농식품유통과, 수산유통가공
	· 사회질서유지	과, 축산정책과
	∘ 긴급통신지원	
	∘ 시설응급복구	· 반장 : 지역계획과장
안전관리반(8)	∘ 에너지기능복구	반원 : 지역계획과, 도로교통과, 건축개발과, 에너지신산업과, 물환경과, 해운항만과, 스마트정보담당관실
	· 재난현장환경정비	
A) = 그 주비 (F)	∘ 의료·방역·장례	· 반장 : 식품의약과장
의료구호반(5)	∘ 수색구조·구급	◦ 반원 : 식품의약과, 건강증진과, 소방본부(구조구급과), 노 인복지과
홍보협력반(4)	∘ 재난수습홍보	∘ 반장 : 대변인 ∘ 반원 : 대변인실,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유관기관(11)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 31보병사단, 해군3함대사령부, 공군제1전투비행단, 광주 기상청,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사, 한국가스공사광주전 남지사, KT전남본부,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

조치목록: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대본) 운영 행동요령 코드번호: 8-2

조치내용: 지대본 실무반 편성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

7	분	임무 및 역할
본 부 장((도 지 사)	전라남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비상대응활동 총괄
부본부장((행정부지사)	○ 현장지휘센터 파견, 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임무 수행
통제관(도	-민안전실장)	○ 방사능 비상상황 통제
담당관(시	·회재난과장)	○ 실무반 상황 보고·전파 총괄
긴급구조통제]단(소방본부장)	○ 화재진압, 긴급의료구호, 주민보호 비상대응활동
조하고거비	사회재난과	 각급 대책본부 비상연락·조정, 현장대응 상황 관리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및 비상연락·조정 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운영 정부 및 상급기관 지시사항 관리 등 방재요원, 유관기관 등 비상상황 전파
종합조정반 -	안전정책과	○ 대책본부 지시사항 전달 및 시군 조치결과 확인○ 사고 상황관리 및 문서관리○ 민방위대 동원 및 군부대 지원 요청
	자연재난과	○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의 복합상황 대응·수습
	총무과	○ 방재요원 비상연락망 점검, 소집, 인원 점검
운영지원반	사회재난과	○ 비상대응활동 필요 자원 수배·공급 등 상황대응 ○ 행동매뉴얼, 각종 비상대응 활동자료 파악 배포
	예산담당관	ㅇ 긴급예산 확보 및 정부예산지원 요청 등
	자치행정과	ㅇ 질서유지 및 주민보호, 대한적십자 협업 지원
	도민행복소통실	ㅇ 자원봉사자 지원 및 배치 관리, 민원관리
	자연재난과	구호소 운영관리(음식, 생필품 공급) 및 현장 구호센터 설치 지원이재민 현황 파악 및 가족 찾기 지원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노인복지과	ㅇ 노인 대피대책 및 보호시설 보호 상황대응
	장애인복지과	ㅇ 장애인 대피대책 및 보호시설 보호 상황대응
주민보호반	식품의약과	ㅇ 식품오염검사 및 음식물 섭취제한 등 식품안전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 보육아동, 다문화 등 특수계층 대피 및 보호조치
	도로교통과	ㅇ 오염지역 우회로 설정 및 주민 수송대책 수배 지원
	해운항만과	ㅇ 선박통제 및 내항 질서유지 지원 상황대응
	농식품유통과	ㅇ 농식품 유통통제 지원
	수산유통가공과	ㅇ 수산물 유통통제 지원
	축산정책과	○ 축산물 유통통제 지원

7	· 분	임무 및 역할					
	스마트정보담당관	ㅇ 대책본부 통신설비 및 긴급통신복구 지원 관리					
	지역계획과	○ 현장응급복구 총괄, 인력·자원 수배 및 공급					
	도로교통과	ㅇ 도로·교량 복구					
안전관리반	건축개발과	ㅇ 붕괴 건축물 복구, 이재민 긴급주거지원					
	에너지신산업과	○ 에너지 수급대책 수립 추진					
	물환경과	ㅇ 재난 폐기물 및 제염 폐기물 처리 지원					
	해운항만과	ㅇ 해양오염검사, 해양오염 제염(선박 등) 지원					
	식품의약과	○ 구호소 현장진료소 운영 ○ 갑상선 방호약품 및 의약품 확보 지원 ○ 비상진료병원 운영관리 지원					
의료구호반	건강증진과	ㅇ 구호소 방역 및 보건활동(보건소 등) 지원					
	노인복지과	○ 사망자 장례지원 및 합동분향소 운영					
	구조구급과	○ 긴급구조·구급활동 대응, 구조차량 배치 및 운용 ○ 공중수색 지원 및 비상헬기 운용 등					
홍보협력반	대변인실	○ 비상상황 및 주민보호 조치사항 대주민 홍보 ○ 주민행동요령 홍보 및 주민 유도방송 지원 ○ 보도자료 배포, 취재 대응, 언론분석, 유언비어 통제					
	안전정책과	ㅇ 민방위 비상경보 전파					
	사회재난과	○ 재난방송(DMB) 및 재난문자(CBS) 전파					
	전남교육청	○ 학교(학생) 대피·소개 및 수송대책 확보 ○ 학생 보호대책 추진					
	전남경찰청	○ 출입통제소 운영 및 교통통제, 소개차량 에스코트 ○ 소개지역, 구호소 등 치안(질서) 유지 및 순찰활동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 해상안전(질서) 유지 및 어선·선박 통제 ○ 환경방사선 탐사(해상) 및 오염방제 지원					
	제31보병사단	제독소 운영 및 화학차 등 장비 지원방사능 오염환자 분류 및 제염활동 지원환경방사선 탐사(육상) 병력 및 장비지원					
	해군3함대 사령부	ㅇ 해상 오염방제 및 주민대피 해상수송 지원					
유관기관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독소 운영 및 화학차 등 장비 지원방사능 오염환자 분류 및 제염활동 지원환경방사선 탐사(공중) 병력 및 장비지원					
	광주기상청	ㅇ 국지기상 및 예보 정보 제공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사	○ 긴급 전력복구 지원 및 수급 대책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사	○ 긴급 가스복구 지원 및 수급 대책					
	KT전남본부	ㅇ 긴급 통신복구 지원 및 구호소 등 통신 설비 지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 이재민 구호활동 상황 대응 ○ 소개주민 급식 지원 ○ 그호스 보기하도 및 그호므프 기의					
		ㅇ 구호소 봉사활동 및 구호물품 지원					

조치목록: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대본) 운영 행동요령 코드번호: 8-3

조치내용: 지대본 운영 및 지원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협업기관

1. 주민보호조치 계획 통보

- 2. 주민대피 · 소개 지시 및 지원
- 3. 구호소 운영 지시 및 지원
- 4. 식수, 농수축산물 섭취, 유통제한 지시 및 지원
- 5. 비상대응물품 및 장비 지원
- 6. 환경방사능 탐사활동 지원
- 7. 긴급 의료지원 대책 지시 및 지원
- 8. 사고 대응 및 수습 대책 협의
- 9. 상급기관 응원요청 및 업무지원
- 10. 긴급구조 및 응급복구 상황종합
- 11. 협업 기능별 조치사항 총괄
- 12. 유관기관 협업 총괄
- 13. 사고수습 총괄 및 사후대책 강구

코드번호: 10-1

행동요령

조치목록: 대민지원

조치내용: 민원접수 창구 설치 및 운영

주관부서: 도민행복소통실

지원부서 :

협업기관 : 지자체 민원부서

1. 장소

- O 도 및 시·군 청사 내 민원실 활용
- O 민원접수 창구 명패·배너 등 설치

2. 인력배치

O 도민행복소통실 및 시·군 민원실 인원 중심

3. 운영방법

-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창구에서 해결, 불가피한 경우만 이첩
 -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종합안내서」를 비치하여 One-Stop 해결
 - 전기, 가스, 통신 등 라이프라인은 안전관리반에 협조 요청

조치목록: 이재민 구호 행동요령 코드번호: 11-1

조치내용: 이재민 관리

주관부서 : 자연재난과

지원부서 : 자치행정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

성기족정책관, 식품의약과, 도민행복소통실

지자체, 전라남도교육청, 대한적십자,

협업기관: 보건소

1. 이재민 현황 파악

O 이재민 발생 및 조치사항 실시간 파악

- 시·군 방사능방재대책본부로부터 이재민 발생 및 경유지, 임시 거주시설 입소현황 취합

2. 이재민 구호 현황 보고

O 주민보호반장은 매일(5시, 10시, 16시, 22시(종합)) 이재민 구호 상황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도지사), 행정안전부에 보고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6조(재해구호상황 등의 보고)

이재민 피해수습 상황 보고

(제1쪽)

														,	
	일	시													
1.피해개요	장	소													
	원	인													
2.인명피해															
계		명	사밍	+		명	중상			명	경·	상		명	
3.이재민(일	실시대	피자)													
7	#				이재민	1				일시	대피지	ŀ			
세대	인	OI	세대			인원			JI FII		인원	<u> </u>		비고	
게네	긴	건	게네	겨		남	0‡		네 대	계	님	+	여		
4.피해자 지	[원				·							·	·		
지원	실항목			지원현황											
임시주거	시설	제공		세대		세대		네대		인원				명	
임시주거시	설로	지정된	구분 학		- - - - - -	경로당	탕	마을	을회관	체원	육관	7	' 타		
<u>ح</u>	상소		계												
		급	급식차량		Г		대	급식인원		명					
급식 및 세탁		세	세탁차량		С		대	세탁량		ŧ	톤				
병원	치료		입원환자				명	진료비(추계)		계)	천원		천원		
의료방	역서비	스	의료지원		호		회	방역지원		원	회				
장:	제비													천원	
심리회	복 지	원	상담실	상담실적(누계)			명(명)	상딛	∤인력(-	누계)		명(명)	

	재해구호기							- ` "- ' ' 천원
	금 지원액							신권
		구분	구호기관	대한 적십자사	전국재해 구호협회	재난관리 책임기관	민간 등	계
		응급구호 세트						
	구호물품 지급	취사구호 세트						
그 밖의 구호지원 관련		개별구호 세트						
보고사항		그 밖의 구호물품						
		계						
	봉사활동 인력(누적)							명
	이재민	재난	관리기 금을	통한 지원				천원
	주거대책	전세임대지원						천원

년 월 일

보고 기관명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조치목록: 이재민 구호 행동요령 코드번호: 11-3

조치내용: 이재민 지역 구호센터 설치

주관부서 : 자연재난과

자치행정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

지원부서: 성가족정책관 식품의약과 건강증진과 도

민행복소통실

지자체, 전라남도교육청, 대한적십자.

협업기관 : 보건소

시기 1.

O 설치준비 : 청색비상 발령 즉시

O 설치·운영 : 적색비상 발령 즉시

2. 구성 : 시·군별 구성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7조

- O 본부장(단체장)
- 총괄관(부단체장)
- 조정관(구호관련국장)
- 통제관(과장)
- 실무반(이재민구호반, 의료지원반, 전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
- 3. 임무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8조
 - O 임시주거시설. 급식 및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 구호상황 지원
 - O 재해구호 관련 단체에 구호물자·인력·장비 등 지원 요청
 - O 응급의료기관, 보건소를 통한 의료지원 및 민간의료단체의 의료지원 요청
 - O 재해지역에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실시
 - O 재해지역의 위생점검, 식중독 예방 및 급식관리 등 오염 예방조치

조치목록: 이재민 구호 행동요령 코드번호: 11-4

조치내용: 이재민 수용시설 운영

주관부서 : 자연재난과

자치행정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

지원부서: 성가족정책관, 식품의약과, 건강증진과, 도

민행복소통실

협업기관 : 지자체, 전라남도교육청, 대한적십자.

보건소

1. 시기

O 설치준비 : 청색비상 발령 즉시

O 설치·운영 : 적색비상 발령 즉시

2. 설치·운영 요령

O 재난 피해지역 풍향에 따른 주민의 소개경로 및 지정 구호소 파악

○ 학교 체육관 등 구호소 관리상태 파악 및 개방 준비 지시

- 지자체(광주, 목포,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신안), 교육청에 지시

- 소개 대상 인구에 따라 적정 수의 구호소 지정 유도

O 이재민 생활 필수품(구호 물품) 확보 현황 파악 및 지원

- 재난 피해지역 인근 업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

O 비상진료센터 설치 지시(지역 보건소)

- 위생 · 의료서비스 및 심리치료 등

코드번호: 11-6

행동요령

조치목록: **이재민 구호** 조치내용: **이재민 구호**

주관부서 : 자연재난과

자치행정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

지원부서 : 성가족정책관, 식품의약과, 건강증진과, 도

민행복소통실

협업기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1. 구호방법(재해구호법 제4조)

O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학교, 체육관 또는 천막제공

O 급식(식품) 제공 : 학교 급식시설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급식차량 동원 제공(필요시 식당지정 또는 식비 지원)

- 쌀, 부식 등은 예비비, 재난기금 등을 활용 구매
- O 의류, 침구 등 생활필수품 제공 : 응급구호 및 취사구호세트 제공
 - 자체보유물량 부족 시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즉시 조달
- O 의료서비스의 제공 : 구호소 또는 거점별 응급진료소 설치
- O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 구호소 및 광역방역 활동
 - 필요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활동
- O 위생지도 : 식중독 등 예방 등 급식관리
- O 장사(葬事)의 지원 : 장례비 지원 또는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 O 심리회복의 지원 : 광주·전남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지역병원, 대학

지원을 받아 구호소 내 또는 거점 상담소 설

치

코드번호: 11-8

행동요령 조치내용: 구호물자 지원 요청

조치목록: 이재민 구호

주관부서 : 자연재난과

자치행정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

지원부서: 성가족정책관, 식품의약과, 건강증진과, 도

민행복소통실

협업기관 :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1. 중앙 및 인접 지자체에 구호물자 및 인력 지원 요청(재해구호법 제6조)

2.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물자 및 인력 지원 요청

3. 긴급구호 지원

O 구호센터를 중심으로 개별 구호소 내 이재민 우선 지원

O 지역내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봉사인력 적극 활용

코드번호: 13-1

행동요령

조치목록: 장례 지원

조치내용: 사망자 현황 파악 및 공유

주관부서 : 노인복지과

지원부서: 구조구급과, 건강증진과, 식품의약과

협업기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전남지방경찰청

1. 사망자 현황 파악 및 공유

O 소방본부 협조체계 활용 사망자 인적사항 및 안치장소 등을 실시간 파악

- O 사망자 현황은 소방서, 보건소 정보공유 및 교차검증
 - 정보공유를 통해 사망자 숫자, 인적사항 교차검증

2. 희생자 현황게시

- O 기준시점을 반드시 게시하고 실시간 숫자가 바뀌는 상황임을 감안 하여 작정표기
- O 게시는 도 홈페이지 활용하되 정기적 업데이트
- O 사망자 인적사항 내 성명, 성별, 나이, 특징 등 포함

코드번호: 13-2

행동요령

조치목록 : 장례 지원

조치내용: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주관부서 : 노인복지과

지원부서: 구조구급과, 건강증진과

협업기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전남지방경찰청

1. 전담인력배치

O 인원 : 시·군 장례담당 직원 및 봉사자

- O 주요임무
 - 장례지원 절차 안내 및 지원
 - 장례기관의 장례지원 대상자 확인 협조
 - 장례현황 파악 후 지대본 보고

2. 임시/합동분향소 설치운영(필요시)

- O 접근이 용이한 체육관, 공공시설을 이용 분향소 설치
 - 유가족 대기 공간, 필요물품 비치
- 분향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장례지원단 구성 : 노인복지과
 - 유가족 지원, 방문안내, 방문인원집계, 장례현황집계 보고

코드번호: 13-3

행동요령

조치목록 : 장례 지원

조치내용: 유가족 지원대책

주관부서 : 노인복지과

지원부서: 구조구급과, 건강증진과

협업기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전남지방경찰청

1. 장례비 지급보증

O 시기 :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O 목적 : 유가족의 장례비 지급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장례서비스 이용 하도록 지급보증

- 원칙적으로 원인제공자 1차적 책임 있으나, 신속한 장례지원 및 재난수습을 위해 先 지급 보증

2. 지원대책 수립 및 지대본 심의 요청(중대본 설치 시 불필요)

O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3항

O 주요내용 : 지대본 심의안건 작성

- 개인당 장례지원비용, 지급방법

- 소요재원 확보방안

3. 지대본 심의

O 통상적 수준 장례비 범위, 타 법률 지원 기준 참고 결정

긴급복지지원법 장제비 지원

◇ 대상 :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금액 : 1인당 75만원

◇ 절차 : ① 장례지원 요청(유가족) → ② 대상자 확인(공무원) →

③ 지원결정 및 지급(지자체장)

코드번호: 13-4

행동요령

조치목록: **장례 지원**

조치내용: 장례비 지원

주관부서: 노인복지과

지원부서: 구조구급과, 건강증진과

협업기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전남지방경찰청

1. 재원확보

○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O 구상권 청구 :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장례지원절차>

주민보호반 현황 파악

• 사고현장 인명피해 규모 파악 및 상황 전파

Û

소방본부 및 경찰 협조

• 사망자 이송현황 파악, 지원

Û

유가족 지원 (도민소통실 협조 요청) • 유가족 장례절차. 시설이용 관련 지원

• 유가족 1:1 전담공무원 지정, 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

Û

장례비 先 지급보증 (先 보증 後 심의) • 인명피해 규모 등 판단, 장례비 지원 필요 시 지자체에 서 관계기관에 先 지급보증 공문 통보 ※ 세부 지원여부 및 기준은 지역대책본부회의 심의로 결정

Λì

지역대책본부회의 심의

• 단체장 결심 하에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 기준 마련 ※ 자치단체장. 관계 부서장 등으로 구성·운영

 $\hat{\boldsymbol{1}}$

장례비 지원 안내

• 지역대책본부회의 심의로 정한 지원기준을 관계기관(병원, 장례식장 등), 유가족에게 안내

Û

장례비 청구·지급

• 장례비 청구(유가족) 및 지급(원인자 또는 지자체)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신청서 (개인용)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신	청서】		□ 의료비□ 장례비		
ام اجا دا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지원대상자 와의 관계			
신 청 인	주 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성 명		생년월일					
의료비	진료기간	년	월 '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원	주 소							
	의료기관명			신청금액	급	원(₩)	
	성 명		생년월일					
장례비	주 소							
지원	장례일자	년 5	일 일	장례비 실집행액	금	원(₩)	
위와 같이	의료비 및 기	장례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이 :		(,	서명 또는	ộ])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의료비 신청자 - 계좌 사본 - 의료비용(의료기관 및 약국) 영수증 1부 구비서류 2. 장례비 신청자 - 계좌 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 장례비집행 영수증 1부							

코드번호: 15-1~3

행동요령

조치목록 : 긴급통신지원 및 복구요청

조치내용: 긴급통신지원 및 복구요청

주관부서 : 스마트정보담당관

지원부서 : 지역계획과

협업기관: KT전남본부

1. 재난현장 긴급통신 지원

O 현장 통신지원을 위한 KT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현장통신 지원 인력 파악 및 출동 요청

- 사고지역 이동통신 전화폭주 장애대비 → 이동통신사에 이동 기지국 설치 등 대책강구
- 2.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통신설비 지원
 - O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에 따른 통신 수요파악 → 설치장소, 수요량(유선, 인터넷, FAX 등)
 - O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간 통신회선 구성요청(KT)
- 3. 추가 통신지원 파악 및 지원지속
 - O 유가족 대책상황실, 자원봉사 지원등 통신수요 예상
 - 유선전화 설치 예상

코드번호: 16-2

행동요령

조치목록 : 시설응급복구

조치내용: 응급복구 지원 준비 요청

주관부서 : 지역계획과

지원부서: 도로교통과 건축개발과

육군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협업기관: 공군제1전투비행단,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필요자워 파악 및 지워

O 현장 필요자원 파악 및 협업기관 공조체계 구축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KT 상황전파 및 비상연락망 유지

- 초기에는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민간기관·단체에 자원응원 요청
- 2. 인근지자체 및 중앙기관 응원요청
 - O 관할구역 내 시군구가 보유한 자원 소진·부족시 인근 시군구 및 중앙기관에 응원요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응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9조 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코드번호: 16-3

행동요령

조치목록 : 시설응급복구

조치내용: 응급복구 장비 보유현황 파악

주관부서 : 지역계획과

지원부서: 사회재난과, 도로교통과, 건축개발과

육군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협업기관: 공군제1전투비행단,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파악방법

O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이용

O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 협조요청

2. 파악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3조

- O 포대류·묶음줄 등 수방자재
- O 시멘트·철근·하수관 및 강재 등 건설자재
- O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 O 자재·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 O 불도저·굴삭기 등 건설장비
- O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 손전등·축전기·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한 소형장비
- O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 대상 자원

조치목록: 시설응급복구 행동요령 코드번호: 16-4~6

조치내용: 응급복구 지원

주관부서 : 지역계획과

지원부서: 도로교통과, 건축개발과, 안전정책과

육군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협업기관: 공군제1전투비행단,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응급복구 소요 인력 및 장비 파악

O 방사능오염 제염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장비 포함

2.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 지원 요청

O 제염 지원 인력 및 시설복구 장비 등

2. 민방위대원 동원, 의용소방대 등 자원봉사자 지원

○ 민방위대 동원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절차시행

O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자원봉사 요청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서

인력 · 장비 · 자재 등의 소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유자	주소		
응원 요청 사항	일시		
	장소		
	응원 요청 내용		
	요청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 관리자원을 응원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직인

유의사항

응원 요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코드번호: 18-1~3

행동요령

조치목록: 에너지 기능 복구 지원

조치내용: 에너지 공급재개 및 복구 지원

주관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지원부서: 지역계획과, 도로교통과, 건축개발과

육군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협업기관: 공군제1전투비행단,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1. 에너지 공급중단 상황 파악

- O 종류(전기, 가스, 석유 등)
- O 원인
- 피해범위
- 2. 에너지 공급중단 상황 복구 지원
 - O 종류(전기, 가스, 석유 등)
 - O 피해범위
 - O 필요 인력·자원 파악 및 지원
- 3. 에너지 공급재개 지원 요청
 - O 에너지사업자 에너지 공급 중단시 복구 지원 요청

코드번호: 19-1~4 행동요형

조치목록: **재난현장 에너지 지원** 조치내용: **에너지 지원 및 차단**

_____ 주관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지원부서: 지역계획과, 도로교통과, 건축개발과

육군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협업기관: 공군제1전투비행단,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1. 구조구급현장 긴급 에너지 지원

O 현장 응급 복구 및 구조·수색을 위한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지원

2. 이재민 수용시설(구호소) 에너지 지원

O 이재민의 임시 주거에 필요한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지원

3.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에너지 차단 조치

O 재난현장 기존 에너지 설비의 파손 등에 의한 화재·폭발 방지

행동요령 코드번호: 20-1

조치목록: 방재자원 확보 및 수요파악

조치내용: 방재자원 확보현황 및 수요파악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예산담당관. 총무과. 안전정책과

합업기관: 지자체, 경찰청, 해경청, 육·해·공군, 민

방위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필요자워 파악 및 지워

O 현장 필요자원 파악 및 협업기관 공조체계 구축

- 소방, 군부대 등 상황전파 및 비상연락망 유지

O 초기에는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민가기관·단체에 자원응원 요청

2. 인근지자체 및 중앙기관 응원요청

- O 관할구역 내 시군구가 보유한 자원 소진·부족시 인근 시군구에 응워요청
- O 운영지원반은 시군구간 자원 응원·조정, 중앙기관 응원요청

코드번호: 21-2,5

행동요령

조치목록: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조치내용: 군부대 및 유관단체 인력·장비 동원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예산담당관, <mark>총무과</mark>, 안전정책과,

자치행정과

합업기관: 지자체, 경찰청, 해경청, 육·해·공군, 민

합기된 · 방위대

1. 군 인력, 장비 동원을 위한 군부대 지원 요청

○ 육군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공군제1전투비행단

2. 민방위대원 소집

O 시·군 민방위대원 소집 명령 발동

3. 유관단체 인력 동원

O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지역 유관단체 지원 요청

《동원의 요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동원의 절차》

O 민방위대 동원 : 민방위기본법 제26조



○ 군부대 지원요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제1항3호

O 협업기관 지원 요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제1항2호

코드번호: 21-3

행동요령

조치목록: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조치내용:

인력, 자재 동원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예산담당관, 총무과, 안전정책과

합업기관: 지자체, 경찰청, 해경청, 육·해·공군, 민

방위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필요자워 파악 및 지워

O 현장 필요자원 파악 및 협업기관 공조체계 구축

- 군, 경, 소방 등 상황전파 및 비상연락망 유지

- 방사능 방재장비 및 방사능 전문 기술·인력 지원 요청(KINS)

O 초기에는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민가기관·단체에 자원응원 요청

2. 인근지자체 및 중앙기관 응원요청

- O 관할구역 내 시군구가 보유한 자원 소진·부족시 인근 시군구에 응워요청
- O 운영지원반은 시군구간 자원 응원·조정, 중앙기관 응원요청

코드번호: 21-7

행동요령

조치목록: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조치내용: 방재자원 동원 자료 관리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예산담당관, <mark>총무과,</mark> 안전정책과, <mark>자치행정과</mark>

협업기관: 지자체, 경찰청, 해경청, 육·해·공군, 민

방위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자원동원 현황

○○ 사고현장 자원동원 현황

단체명	출동일시 (현장도착)	철수일시	출동 장 인원	지휘관 (성명)	연락관 (성명)	역할	비고

2. 자원배치 현황(현장투입)

○○ 사고현장 자원배치 현황[현장투입]

연번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인원	배치장소	투입시간	철수시간	비고

코드번호: 21-8

행동요령

조치목록: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조치내용: 응급복구 수습 예산 지원

주관부서 : 예산담당관

지원부서: 사회재난과, 총무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지자체,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1. 예산확보

- 시군구 자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활용
- 道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지원

《 재난관리기금 용도 개선 》 -----

- ❖ 재난안전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개정(2016.1.7.), 시행(2017.1.8.)
 -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 가능

2. 예산지원요청

O 시·군 자체 예산확보 및 道 예산 확보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우, 중앙부처(행정안전부, 원안위) 등에 지워 요청

코드번호: 23-2~3 행동요령

조치목록 : 교통상황파악

조치내용: 재난지역 육·해·공 교통상황 모니터링

주관부서 : 도로교통과 지원부서 : 해운항만과

협업기관: 경찰청, 해경청, 육·해·공군

1. 재난발생 주변지역 교통상황 파악

- O 재난·사고 등에 의한 단선구간 파악
- O 주민 대피경로 및 혼잡 예상구간 파악
- O 재난지역 진·출입로 파악 및 우회로 설정
- O 재난지역 인근 해역 선박 운항 파악 및 통제
- 2. 교통 · 출입 통제를 위한 군 · 경 동원 가능 인력 및 장비 협조 요청

코드번호: 24-1~4

행동요령

조치목록: 대체교통수단 마련

조치내용: 교통통제 및 우회 교통수단 마련

주관부서: 도로교통과 지원부서: 해운항만과

협업기관 : 지자체, 경찰청, 해경청, 육·해·공군,

민방위대

1. 교통통제 협조요청에 대한 안내방송 실시

O 협조안내문과 노선변경, 통제구간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명시함

재난 [○○」의 영향으로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통행을 제한하오니 해당지역 주민은 도로 통행 및 보행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또한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시 행 처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나. 기 가 : 2000년 00월 00일 00:00 ~ 00월 00일 00:00

다. 장 소 : ○○지역 전체 및 주변도로

□ 시내(외)버스 노선변경

○ 통제시간 : ○○:○○ ~ ○○:○○

○ 통제구간 : ○○km

○ 시내(외)버스 우회운행 대상 : ○개 노선 (○개업체)

노선번호	현 행 노 선	변경노선

- 버스운행노선이 위와 같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내 입간판과 교통통제 전단지, 도로변 문자전광판, 교통방송 등을 통해 노선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편하시 더라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우회·대체 교통수단 마련

- O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내 주민, 소개지역 비상수송
- O 긴급보호조치구역 내 방사능 오염 우려지역 주민소개 비상수송
- O 방사능 영향범위 밖의 교통두절 지역 비상수송
- O 일반지역의 대중교통 비정상 시 비상수송

수송수단	담당부서	응원요청	수송대책
육상	도로교통과	시내·외 버스 및 전세버스, 영업택시, 군부대 차량 등	- 버스, 택시, 군부대 차량
해양	해운항만과	여객선박, 어촌계, 해경, 군부대 함정 등	- 어업지도선, 일반어선, 여객선, 해양 경비정

코드번호: 24-5

행동요령

조치목록: 대체교통수단 마련

조치내용: 인력 및 자원 수송 지원

주관부서 : 도로교통과 지원부서 : 해운항만과

협업기관: 지자체, 경찰청, 육·해·공군, 민방위대

1. 인력 및 자원 수송 소요 차량 대수 파악

- O 방사능 비 오염지역에 대한 인력 및 자원 수송 소요 파악
- O 주민보호, 구호, 응급복구 등 구분하여 산출
- 2. 차량 보유 및 운송단체 현황 관리, 지원 요청
 - O 주민보호, 구호 관련 우선 지원 요청
 - O 한빛원자력본부 및 현장방사능지휘센터 지원 시는 방사능오염지역 해당 여부 확인 후 지원
 - O 주민수송수단 현황 부록 참조

코드번호: 26-2~7

행동요령

조치목록: 의료 지원

조치내용: 의료 인력, 물품 및 심리치료 지원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지원부서: 구조구급과. 식품의약과

합업기관: 소방서, 보건소,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광역응급의료지원센터

- 1. 의료 인력 및 물품 파악 및 지원(부록 참조)
 - O 재난발생 주변지역 병·의원 및 인력 파악 및 지원
 - O 현장 응급의료소 지원 요구사항 처리
 - O 보건소 인력·의약품 파악 및 지원
 - O 전남 광역응급의료지원센터 상황 전파 및 환자 이송 지원
 - 목포한국병원
 - O 방사선비상진료병원 상황 전파 및 화자 이송 지원
 - 영광기독병원, 영광종합병원, 국군함평병원, 전남대학교병원
 - O 환자이송차량(앰뷸런스 등) 확보

의로번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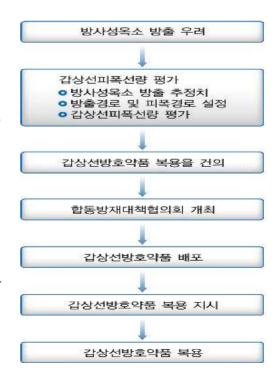
- 2.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구성 및 운영 협조
- 3. 재난 심리치료 지워
 - O 대상: 재난으로 인한 가족, 목격자,

구조자 등

O 내용 : 현장 응급의료소.

보건소를 통한 심리치료

- 4.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
 -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결정에 따라 시・군 보건소에 보관중인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 및 복용 지시



코드번호: 28-1~4

행동요령

조치목록 : 응급치료

조치내용: 방재인력 피폭저감 및 응급처치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지원부서: 구조구급과. 식품의약과

합업기관: 소방서, 보건소,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광역응급의료지원센터

1. 방재 인력 응급진료 비상체계 운영

O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주관 현장 방사선 비상진료소 가동

O 방사선비상진료병원 내 방사능 오염환자 전용 치료실 가동

- 영광기독병원, 영광종합병원, 국군함평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 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2. 방재 인력 제염
 - O 합동 방사선 비상진료센터. 구호소 및 출입통제소 제역시설 이용
- 3. 제염 절차 및 폐기물 처리
 - O 오염정도가 심한 사람을 우선 제염 실시하되, 외상이 있는 경우 의 학적 조치와 병행하여 제염
 - O 환부에 방사성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 O 상처 → 개구부(눈·코·입) → 피부 순으로 제염 실시
 - O 제염에 사용된 식염수 등은 방사성 폐기물로 간주하여 처리

조치목록 : 환자이송 및 관리 행동요령 코드번호: 29-1~3

조치내용: 피폭환자 등 부상자 조치사항 관리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지원부서: 구조구급과 식품의약과

소방서, 보건소,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협업기관 :

광역응급의료지원센터

1. 피폭환자 등 부상자 이송정보 주관기관 신속전파

O 피폭환자 및 대규모 부상자 발생시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보건소, 방사선비상진료병원. 전남 광역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발생 알림

- O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방사선비상진료병원, 전남 광역 응급의료 지원센터와 비상연락망 구축, 이송된 병원 입·퇴원 현황과 부상· 피폭 정도 등을 실무요워이 실시간 파악
- O 피폭환자 현황은 소방 연락관, 보건소, 병원 등과 정보공유 및 교차 검증

2. 보고 및 정보공유

- O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방사선비상진료병원, 전남 광역 응급의료 지원센터와 매일 정보 공유(기준시점 표기)
 - ※ 부상자 인적사항에 대한 오류 발생 시 보호자에게 사유 설명

코드번호: 30-1~17

행동요령

조치목록 : 방재활동

조치내용: 방사능 오염 제염 및 방재활동 지원

주관부서 : 물환경과

지역계획과, 도로교통과, 건축개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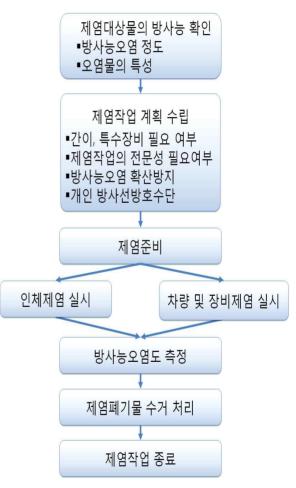
· 해운항만과, 구조구급과

기상청, 경찰청, 소방서, 육·해·공군, 협업기관: 기상성 기상 기상 기상 기상 기상 기상 기상

민방위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방사능 오염 집중 지역에 대한 제염 및 출입관리

- O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의 환경방 사선 감시결과 상시 확인
- O 방사능 오염 집중 지역 인근에 출입 통제소 및 제염소 설치
- 2. 비상방재 실시 및 방재 인력·물품 지원
 - O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방사능 방재 전문 인력·장비 지원요청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심으로 제염계획 수립 및 실시
 - 육군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 령부, 공군제1전투비행단, 민방위 대 인력・장비 지원 요청
- 3. 고립 주민 탐색 및 구조
 - 마을단위 배부된 주민보호용품 활용, 고립주민 피폭 저감활동 실시 - 마을방송망을 통한 주민보호용품 사용안내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휘 하에 고립 주민 탐색 및 구조 실시



코드번호: 31-1,3

행동요령

조치목록 : 보건/위생활동

조치내용: 피해지역 보건활동 및 주민홍보

주관부서 : 건강증진과

지원부서: 구조구급과, 식품의약과

협업기관: 소방서, 보건소, 합동방시선비상진료센터

1. 대피(구호)소 방역 및 현장 응급의료소 활동 지원

- O 이재민 대피(구호)소 방역 실시
- O 이재민 대피(구호)소 내 현장 응급의료소 인력·물품 지원
- 2. 보건활동 주민홍보
 - O 보건소, 현장 응급의료소를 통한 감염·2차 피해 등 주민홍보
 - 이재민 대피(구호)소 등 다중이용시설, 재난 상황의 특수성에 따른 감염, 식중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위생 홍보

코드번호: 35-1~2

행동요령

조치목록: 오염예방

조치내용: 방사능오염지역 파악 및 오염원 차단

주관부서 : 물환경과

지원부서 : 지역계획과, 도로교통과, 건축개발과.

해운항만과

기상청, 경찰청, 소방서, 육·해·공군, 협업기관 :

민방위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방사능 오염 집중 지역에 대한 제염 및 출입관리

O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환경방사선 감시결과 상시 확인

O 방사능 오염 집중 지역 인근에 출입 통제소 및 제염소 설치

2. 비상방재 실시 및 방재 인력 · 물품 지원

- O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방사능방재 전문 인력·장비 지원요청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심으로 제염계획 수립 및 실시
- 육군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공군제1전투비행단, 민방위대 인력 · 장비 지워 요청

코드번호: 38-1~3

행동 요 령 조치목록 : 자원봉사관리

조치내용: 자원봉사자 모집 및 지원

주관부서 : 도민행복소통실 지원부서 : <mark>자치행정과</mark>

협업기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1. 자원봉사자 모집

- O 각 실무반별 역할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 재난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원봉사 기능에 맞는 지역 기반의 민간단체 및 개인 모집
- O 사전 신청 없이 찾아오는 봉사자는 자원봉사지원센터에서 일일 인력투입 현황을 고려하여 자원봉사 기능별 분산 배치

2.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O 작업 기준 및 활동 시간 결정 등 자원봉사자 안전 확보

코드번호: 40-1~5 **행 동 요 령** 조치목록: **주민대피** 조치내용: 인력·장비 점검 및 대피 지시

주관부서 : 도로교통과

자치행정과, 여성가족정책관, 노인복

지원부서 : 지과, 장애인복지과, 자연재난과, 해

운항만과

현업기관: 지지체, 소방서, 경찰청, 해경청, 육해·공군,

비기된 . 민방위대

1.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지역주민 대피준비

O 백색비상 발령시 군 및 읍·면 담당공무원은 주민대피 준비

- 소개경로 및 구호소 확인, 비상경보 방송문안 점검, 마을이장단 등 지도자단체 비상연락망 유지

2.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

O 현장 필요자원 및 동원 인력 파악

- 방송 시설 및 방송 차량, 주민 대피용 차량 등

O 초기에는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민간기관·단체에 자원응원 요청

3. 인근지자체 및 중앙기관 응원요청

O 관할구역 내 시군구가 보유한 자원 소진·부족시 인근 시군구에 응워요청

O 주민보호반, 안전관리반은 시군구간 자원 응원·조정, 중앙기관 응원요청

4. 주민대피 임무 분담

O 현장 주민대피 업무 총괄 : 긴급구조통제단 휘하 현장 소방서

O 비상경보 및 방송 등 주민 안내 : 읍·면 담당공무원

O 주민대피 실시 : 군, 경, 소방, 민방위대원

O 주민수송차량 에스코트 : 경찰청

○ 대피(소개) 경로 통제 : 경찰청

5. 주민대피 지시

O 현장방사능방재센터에서 주민대피가 결정되면 전라남도 방사능 방재대책본부장은 실무반 및 지자체에 주민대피 지시

코드번호: 40-6~9 **행 동 요 령** 조치목록: **주민대피** 조치내용: **주민대피 차량동원 및 대피실시**

주관부서 : 도로교통과

자치행정과, 여성가족정책관, 노인복

지원부서: 지과, 장애인복지과, 자연재난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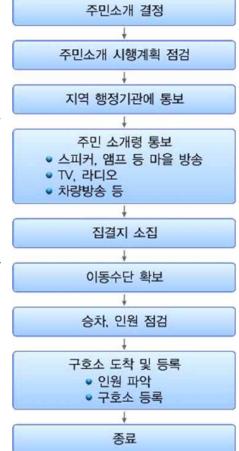
운항만과

현업기관: 지지체, 소방서, 경찰청, 해경청, 육해·공군,

· 민방위대

1. 비상계획구역 지역주민 대피실시

- O 적색비상 발령 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지역주민 대피 실시
- 적색비상 발령 시 현장방사능방재지휘 센터 결정에 따라 긴급보호조치계획구 역 지역주민 대피 실시
- 2. 주민대피소개 차량 동원
 - O 대상지역 집결지(마을회관)에 버스 동원
 - 각 지자체 운송업체 동원
 - 인접 지자체 운송업체 및 군부대 수송 차량 지원 요청
- 3. 재해약자 대피
 - O 대피 방법
 - 비상계획구역 외부 유사시설로 대피
 - 구급차,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영
 - 대피(소개) 시간 고려, 청색비상 발령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로 사전소개 건의, 승인 후 시행
 - O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 O 협업기관 협조 요청(소방본부, 전남지방경찰청)
 - 구급차(앰뷸런스), 에스코트 등 지원 요청
- 4. 주민 대피완료 보고
 - O 마을주민 구호소 입소 등록 유·무 확인
 - O 대피(구호)소 이탈 인워 및 고립 주민 인워 파악
 - O 주민보호반장은 안전관리반과 협조하여 주민 대피결과 보고



코드번호: 41-1~2

행동요령

조치목록 : 통제활동

조치내용 : 교통 및 출입통제

주관부서 : 도로교통과 지원부서 : 해운항만과

합업기관: 기자체, 경찰청, 해경청, 소방서, 육해·공군,

^{1 답기된 ·} 민방위대, 한국원지력인전기술원

1. 방사능 오염 집중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 O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의 환경방사선 감시결과 상시 확인
- O 방사능 오염 집중 지역 인근에 출입 통제소 및 제염소 설치
- 2. 재난 현장 인근 지역 교통 통제
 - O 전남지방경찰청, 서해해양경찰청 중심 육로·해상 교통 통제 및 우회 로 확보
 - 육군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공군제1전투비행단, 민방위대 인력·장비 지원 요청
- 3. 출입통제 및 교통통제소 현황
 - O 부록 11 참조

코드번호: 42-1~7

행동요령

조치목록: 질서유지활동

조치내용: 재난현장 질서유지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지원부서: 도로교통과. 해운항만과

협업기관 : 지자체, 경찰청, 해경청, 소방서, 육·

해·공군, 민방위대

□ 전남지방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응원 요청 및 지원

- 1. 현장주변 통제선
 - O 현장주변 폴리스 라인 설치 지시
 - O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출입로 확보
- 2. 범죄활동 예방 및 지원
 - O 재난현장 인근 방범순찰
 - O 대피한 건물 사상자 소지품의 약탈 방지 등 범죄예방 활동
 - O 사상자 구호 및 응급후송 지원
- 3. 이동파출소 운영 및 배치
 - O 주민대피소 주변 이동파출소 운영
 - 사상자 및 부상자 신원확인
 - 실종자 및 유류품 접수
 - O 응급의료시설 주변 강력 배치
 - O 사상자 구호 및 응급후송 지원

코드번호: 42-8

행동요령

조치목록: 질서유지활동

조치내용: 음식물 및 농·수·축산물 유통 통제

주관부서 : 식품의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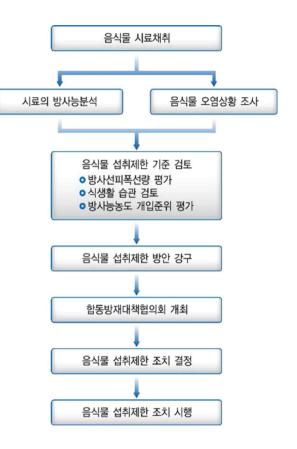
지원부서 : 농식품유통과, 수산유통가공과, 축산정

책과

협업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지자체, 경찰청, 해경

청. 소방서. 육·해·공군. 민방위대

- 1. 음식물 오염상황 파악
 - O 합동방사선감시센터 주관 음식물 오염상황 조사
- 2. 음식물 섭취 제한
 -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결정에 따라 음식물 섭취 제한
 - 단반감기 핵종 오염 시 일시 저장 후 섭취
 - 허용치 초과 오염시 폐기처분
 - O 재난발생 인접 지자체 및 중앙 정부 협조 요청
 - 대체 음식물 및 비상급수 확보 등



<음식물의 섭취제한 기준>

방사성핵종		육류, 어류, 곡물 (Bq/kg)	야채, 과일 (Bq/kg)	물, 우유 (Bq/L)	유아식품 (Bq/kg)
1군	¹³⁴ Cs, ¹³⁷ Cs, ¹⁰³ Ru, ¹⁰⁶ Ru, ⁸⁹ Sr	2,000	1,000	200	100
2군	¹³¹ I, ⁹⁰ Sr	1,000	500	100	10
3군	²³⁵ U, ²³⁸ U	100	100	20	10
4군	²⁴¹ Am, ²³⁸ Pu, ²³⁹ Pu, ²⁴⁰ Pu, ²⁴² Pu	10	10	10	1
5군	³ H			100 kBq/L	

- 3. 농·축·수산물 오염상황 파악
 - 합동방사선감시센터 주관 농· 축·수산물 오염상황 조사
- 4. 농・축・수산물 반출・소비 통제
 - O 현장방사능방재제휘센터 결정에 따라 농·축·수산물 반출·소 비 통제
 - 단반감기 핵종 오염 시 일시 저장 후 재검사
 - 허용치 초과 오염시 폐기처분



<반출 또는 소비 통제 기준>

방사성핵종		۸_	농·축·수산물		
		야채, 과일 (Bq/kg)	물, 우유 (Bq/L)	유아식품 (Bq/kg)	(Bq/kg)
1군	¹³⁴ Cs, ¹³⁷ Cs, ¹⁰³ Ru, ¹⁰⁶ Ru, ⁸⁹ Sr	1,000	200	100	2,000
2군	¹³¹ I, ⁹⁰ Sr	500	100	10	1,000
3군	²³⁵ U, ²³⁸ U	100	20	10	100
4군	²⁴¹ Am, ²³⁸ Pu, ²³⁹ Pu, ²⁴⁰ Pu, ²⁴² Pu	10	10	1	10
5군	³ H		100 kBq/L		

코드번호: 44-1~5

행동요령

조치목록 : 수색구조구급지원

조치내용: 수색구조구급지원

주관부서: 소방본부(구조구급과) 지원부서: 건강증진과, 식품의약과

소방서, 보건소,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협업기관: 광역응급의료지원센터, 경찰청, 해경청,

육·해·공군, 민방위대

1. 긴급구조통제단 지원요청 사항 협조

- O 비상진료병원 상황 전파 및 동원 가능 자원 파악
 - 영광기독병원, 영광종합병원, 국군함평병원, 전남대학교병원
- O 전남 광역 응급의료지원센터 상황 전파 및 동원 가능 자원 파악
 - 목포한국병원
- 2. 수색 · 구조 · 구급 상황파악
 - O 관할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활동상황 파악
- 3. 긴급구조 현장 상황 기록 및 지원 요청사항 검토
 - 관할 소방서·119안전센터 상황보고 관리
 - 인력·물자 등 지원 요청사항 확보안 강구
- 4. 사상자 등 피해규모 확인 및 보고
 - 인명피해 현황 파악 및 피해규모 예상
- 5.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및 구조 활동 지원
 - O 협업기관 비상연락망 유지 및 중앙·인접 지자체 지원 협조 요청

코드번호: 46-1

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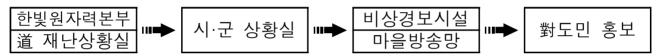
조치목록 : 재난방송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조치내용: 위기경보전파

지원부서: 사회재난과, 대변인실 협업기관: 연합정보센터, 언론사

- 1. 시기 : 비상 발령 접수 즉시
- 2. 위기경보 시설
 - O 민방위경보시설
 - O 한빛원자력본부 비상경보시설
 - O 시군 재난방송망 및 마을방송
 - O 가두방송 차량을 이용한 확성기 방송



- 3. 전파 내용 : 비상 상황전파 및 주민행동요령 홍보
 - O 적색비상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주민 즉시 소개 안내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대피·소개 준비 안내
- 4. 유관기관 위기경보 전파

코드번호: 46-2 **행동 요 령** 조치목록: 재난방송

조치내용: 재난방송(대응 및 수습상황, 위기경보)

주관부서 : 대변인실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협업기관: 연합정보센터, 언론사

1. 방송(안) 작성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내 연합정보센터로부터 관련내용을 받아 사고대응 및 수습상황을 중심으로 방송(안) 작성

- 청색비상은 사고 영향이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됨을 강조
- O 적색비상은 사고 영향이 부지 밖 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됨을 강조
- O 방송(안) 작성 후 연합정보센터와 협의

2.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

- O 기자실
- O 전남도청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게시
- 중앙·지방 언론사, 유관기관, 상급기관 자료 배포

코드번호: 46-3 **행동 요 령** 조치목록: 재난방송

조치내용: 국민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홍보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지원부서: 사회재난과, 대변인실 협업기관: 연합정보센터, 언론사

1. 홍보(안) 작성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내 연합정보센터로부터 관련내용을 받아 홍보(안) 작성

- 별지 제10호 "방사선비상발령에 따른 홍보문" 참조
- 홍보(안) 작성 후 연합정보센터와 협의

2. 이용설비

- O 민방위경보시설
- O 한빛원자력본부 비상경보시설
- O 시군 재난방송망 및 마을방송
- O 가두방송 차량을 이용한 확성기 방송

코드번호: 47-1,5 **행동요령** 조치목록: 언론대용

조치내용: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주관부서 : 대변인실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협업기관: 연합정보센터, 언론사

1. 언론 모니터링

O 실시간 뉴스보도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지

O 주요 신문보도 내용 검토

2. 오보대응

- O 유언비어, 오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즉시 해명 및 브리핑(보도자료 등 활용) 실시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를 신속하게 확인
 - 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 요청
 - 보도 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바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 특히, 재난상황에 대한 오보는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혼란을 야기함

조치목록 : 언론대응 행동요령 코드번호: 47-2

조치내용: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주관부서: 대변인실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협업기관: 연합정보센터, 언론사

1. 보도자료 작성

O 배포일시. 담당자을 명확히 기입

O 사고상황을 요약 기술하고, 대응상황 및 수습복구 계획, 시민 당부사항 등을 작성

2. 배포

O 언론의 마감시간(조간:오후5시, 석간:오전10시)이전 자료 배포

O 방송은 반드시 화면 제작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 필요시 주기적으로 배포가능하나 보도시점을 명확히 할 것

	ㅂ ㄷ 기 ㄹ	작 성	전라남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전라남도	모고자료	담당자	홍보협력반 〇 〇 〇
	201ㅇ년 ㅇ월 ㅇㅇ일 조간부터	표·경 ^F	○○○○@korea.kr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00-000-0000

제목 : 원전 0호기 방사선 00비상 발령

- □ 금일(0000.0.00) 오전(오후) 00시 00분 경. OO시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 자력발전소 O호기 발전소 주요 냉각 펌프들에 전원을 공급하는 발전소 안전계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빛원자 력발전소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00:00 방사선 OO비상을 선포하였습니다.
- □ 발전소 측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 상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라남도, 영 광군, 고창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방사선비상 대책반을 설치, 운영하며 비상경계체제를 유지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 현장 방사능방재 지휘센터의 설치를 준비하는 등의 비상경계체제를 ...
- □ 향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연합정보센터를 통하여 공식으로 공표될 것 입니다.

제5절 수습·복구

가. 대응 지침

- O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O 이재민 지원대책 강구

나. 지휘부 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사고수습활동 지휘점검]				
	O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재정적 지원 검토 지시				
	O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생활안전 조치 지시				
	O 특별교부금 지원 건의 검토				
	O 피해현장 방문 및 주요인사 현장방문 수행				
E-LU	O 사망·실종자 유족보조 조치 지시(장의비, 위로금 지급 등)				
도지사	O 피해원인 분석 및 향후 종합대책 마련 지시				
	[필요시]				
	O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등의 지원				
	- 절차 : 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도지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				
	대통령(선포 및 공고)				
	O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및 관계법령 개선 지시				
	 [수습·복구 지원]				
	O 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				
	│ │ ○ 이재민 구호대책 등 점검·지원				
도민안전실장	O 부족자원 등 파악·지원				
	O 신속한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지원				
	O 사고대응 문점점 분석 및 대책 강구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 다.

수습 · 복구

코드번호: 9-1

행동요령

조치목록 : 재난 및 사고 복구

조치내용: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현업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1. 피해복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분야별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 및 보고
- O 필요시 분야별 정밀안전진단 시행
- O 분야별 임시 복구 및 항구 복구 등 종합 계획 수립
- O 분야별 소요자재, 복구장비, 인력 확보 및 투입 계획 수립
- O 관련 유관기관 및 비상지원 협력업체 긴급 복구지원 협조 요청
- O 분야별 피해시설 복구 작업
- 2. 지원 장비 인력 투입 및 시설복구 통합체제 운영
 - O 피해 사항별 자원 동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O 지원 장비 인력 투입 및 시설복구 통합체제 운영

코드번호: 9-2

행동요령

조치목록: 재난 및 사고 복구

조치내용: 주민복귀 결정사항 이행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자연재난과, 자치행정과, 지역계획과

현업기관: 지지체, 소방서, 경찰청, 해경청, 육해·공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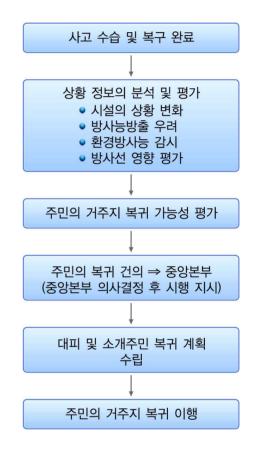
기관 . 밀방위대

1. 사고 수습

- O 분야별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 및 보고
- O 필요시 분야별 정밀안전진단 시행
- O 분야별 임시 복구 및 항구 복구 등 종합 계획 수립
- O 분야별 소요자재, 복구장비, 인력 확보 및 투입 계획 수립
- O 관련 유관기관 및 비상지원 협력 업체 긴급 복구지원 협조 요청
- O 분야별 피해시설 복구 작업
- 2. 지원 장비 인력 투입 및 시설복구 통합체제 운영
 - O 피해 사항별 자원 동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지원 장비 인력 투입 및 시설복구 통합체제 운영

3. 주민복귀 실시

- O 주민복귀 가능성 평가
- O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주민복귀 결정
- O 주민복귀 계획 수립 및 이행
- ※ 병원, 노약자, 장애인 및 기타 특수 시설이 요구되는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이복귀한 다음에 복귀하도록 조치



코드번호: 9-4

행동요령

조치목록: 재난 및 사고 복구

조치내용: 재난피해 재발방지대책 강구

주관부서 : 사회재난과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 · 국원자력안전기술원, 민간감시센터

1. 사고합동조사반 운영

O 조사반 주관부서장 및 부서원뿐만 아니라, 소방,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O 중앙정부차원에서 합동조사반이 운영되는 경우 필요사항 적극 지원

2. 사고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 O 사고 원인 조사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O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피해자 처리방안 강구 등 향후 대책 수립
-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사고조사결과 위법내용에 대해 처벌

코드번호: 12-1~2

행동요령

조치목록 : 이재민 경제적 지원

조치내용: 재해구호예산 및 특별교부세 확보

주관부서 : 예산담당관

지원부서 : <mark>총무과</mark>,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1. 예산확보

- O 시군구 자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활용
- 道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지원

《 재난관리기금 용도 개선 》

- ❖ 재난안전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개정(2016.1.7.), 시행(2017.1.8.)
 -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 가능

2. 예산지원요청

O 시·군 자체 예산확보 및 道 예산 확보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우, 중앙부처(행정안전부, 원안위) 등에 지원 요청

수습·복구

코드번호: 12-4~5

행동요령

조치목록 : 이재민 경제적 지원

조치내용: 저소득층 및 의료 지원

주관부서 : 예산담당관

지원부서 : <mark>총무과</mark>, 건강증진과, 자연재난과 협업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1. 긴급 지원의 종류

O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O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O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O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시설 입소 또는 이용의 비용

O 교육지원 : 초중고 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운영지원비 등

O 그 밖의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례비, 전기요금

2. 의료지워 범위

O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코드번호: 14-2~3

행동요령

조치목록 : 피해보상 및 지원

조치내용: 피해보상 접수 및 지원

주관부서 : 도민행복소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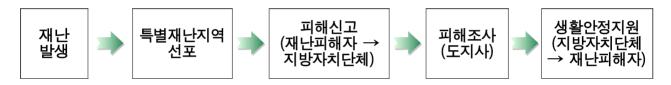
지원부서: 예산담당관, 총무과, 사회재난과

협업기관: 지자체

1. 접수창구 설치

- O 도 및 시·군 청사 내 민원실 활용
- O 민원접수 창구 명패·배너 등 설치

2. 처리 절차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	등의 작성병	박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 곳에 √ 표	- :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			접수일	,,,,,,,,,,,,,,,,,,,,,,,,,,,,,,,,,,,,,,,			처리기간		
1. 신.	고인								
	성명				주민	등록번호		-	
	주소				휴대	전화번호			
피하	자와의	관계							
2. 피	해자	[] 신고	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	우 중복되는	- 사항은 작성하	하실 필요 없습니	- - - - - - - - - - - - - - - - - - -	
	성명				주민	등록번호		_	
	주소				휴대	전화번호			
서	대주 (여부	[] 세대주	=, [] 세대원	フ	·족 수	C.	명(본인포함 세다	·원)
1	.등학생	성 수	() 고등학교	명 ※	《 비전문계 고등	등학교만 작성		
	계좌번	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	해내용		1						
피	해발생	일시							
피	해발생	장소							
인명	신	· - - - -		[] 사망·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업피해 (휴업 [] / 폐업 [] / 실직 [])					
피해	확정			(유업 [] / 폐업 F, [] 부상(부상			├어교해(호어 []/폐업[]/실직	[])
		 설명	1	2	01.	3	4)/-	L J/
	총면적	(소유+임차)	1	2		3	4		
		· 허가 • - 번호	1	2		3	4		
시설	피해	신고	1	2		3	4		
피해	물량	확정	1)	2		3	4		
	피해	구분	1)	2		3	4		
	피해	원인	1)	2		3	4		
	융자신	청 여부	[]	[]	[]		[]	
4. 확	인사항								
		고 여부	여 [] , 부	[]	내용	. .			
	· 시 • 군 해신고		여 [] , 부	[]	내용	} :			
$\lceil V \rceil$	사회재년	난 구호	및 복구 비용	용 부담기준 등	등에 관현	한 규정」	제5조제1형	항 및 제2항	에 따
라 성	행활안정	성지원등	을 받기 위히	h여 위와 같이	신고힙	니다.			
								년 월	일
				신 <u>.</u>	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기	다치시	장 ∙ 특肯	별자치도지시	ㅏ∙시장 ∙ 군∸		성장 귀하			
				- 16	62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 공기관 및「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 *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 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 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코드번호: 16-7~9 행동요령

조치목록: **시설응급복구**

조치내용 : 응급복구 지원

주관부서 : 지역계획과

지원부서: 도로교통과, 건축개발과, 사회재난과

육군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협업기관: 공군제1전투비행단,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복구 소요 인력 및 장비 파악

O 방사능오염 제염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장비 포함

2.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 지원 요청

O 제염 지원 인력 및 시설복구 장비 등

3. 피해 및 복구상황 보고(안전관리반장)

4. 복구 소요비용 추산 및 보상 등 사후관리 요청(사회재난과)

코드번호: 18-2~3

행동요령

조치목록: 에너지 기능 복구 지원

조치내용: 에너지 공급재개 및 복구 지원

주관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지원부서: 지역계획과, 도로교통과, 건축개발과

육군제31보병사단, 해군제3함대사령부,

협업기관: 공군제1전투비행단,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1. 에너지 공급중단 상황 파악

- O 종류(전기, 가스, 석유 등)
- O 원인
- O 피해범위
- 2. 에너지 공급중단 상황 복구 지원
 - O 종류(전기, 가스, 석유 등)
 - O 피해범위
 - O 필요 인력·자워 파악 및 지원
- 3. 에너지 공급재개 지원 요청
 - O 에너지사업자 에너지 공급 중단시 복구 지원 요청

코드번호: 26-7

행동요령

조치목록: 의료 지원

조치내용: 이재민, 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치료 지원

주관부서: 자연재난과

지원부서: 구조구급과, 식품의약과, 건강증진과

합업기관: 스방서, 보건소, 방사선 비상진료병원.

광역응급의료센터

1. 심리회복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O 대상자: 재난으로 인한 신체·재산적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

- 이재민, 유가족, 동행인, 재난목격자, 수습복구 활동 참여자

O 지원방법: 인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안내

2. 심리치료 지원: 정신보건법

O 대상자 : 재난을 직·간접으로 경험하여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는 사람

O 지원방법: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안내

- 사고현장 심리지원 서비스

- 가정방문 심리지워 서비스

코드번호: 31-1,3

행동요령

조치목록 : 보건/위생활동

조치내용: 피해지역 보건활동 및 주민홍보

주관부서 : 건강증진과

지원부서: 구조구급과, 식품의약과

협업기관 : 소방서, 보건소, 방사선 비상진료병원,

^{근 ·} 광역응급의료지원센터

1. 일시이주 지역 방역 및 보건·의료 활동 지원

O 일시이주 지역 방역 실시

O 일시이주 지역 이재민 보건·의료 인력 및 물품 지원

2. 보건활동 주민홍보

- 보건소, 전남 광역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한 감염·2차 피해 예방 등 주민홍보
 - 일시이주지 등 다중이용시설, 재난 상황의 특수성에 따른 감염, 식중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위생 홍보

코드번호: 42-1~7

행동요령

조치목록: 질서유지활동

조치내용: 재난현장 질서유지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지원부서: 도로교통과, 해운항만과

지자체, 경찰청, 해경청, 소방서, 육· 협업기관: --- --

해·공군, 민방위대

□ 전남지방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응원 요청 및 지원

- 1. 현장주변 통제선
 - O 방사능 오염지역 출입통제
 - O 제염, 복구장비·차량 진출입로 확보
- 2. 범죄활동 예방 및 지원
 - O 일시이주 지역 인근 방범순찰
 - O 일시이주 지역 이재민 소지품의 약탈 방지 등 범죄예방 활동
 - O 이재민 복지활동 지원

코드번호: 42-8

행동요령

조치목록: 질서유지활동

조치내용: 음식물 및 농·수·축산물 유통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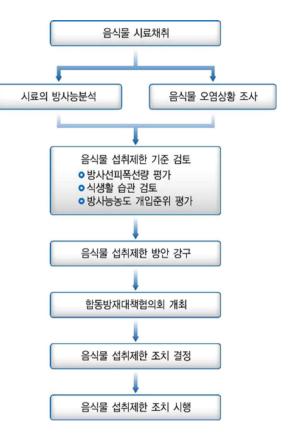
주관부서 : 식품의약과

지원부서 : 농식품유통과, 수산유통가공과, 축산정

책과

경청, 소방서, 육·해·공군, 민방위대

- 1. 음식물 오염상황 파악
 - O 합동방사선감시센터 주관 음식물 오염상황 조사
- 2. 음식물 섭취 제한
 -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결정에 따라 음식물 섭취 제한
 - 단반감기 핵종 오염 시 일시 저장 후 섭취
 - 허용치 초과 오염시 폐기처분
 - O 재난발생 인접 지자체 및 중앙 정부 협조 요청
 - 대체 음식물 및 비상급수 확보 등



<음식물의 섭취제한 기준>

방사성핵종		육류, 어류, 곡물 (Bq/kg)	야채, 과일 (Bq/kg)	물, 우유 (Bq/L)	유아식품 (Bq/kg)
1군	¹³⁴ Cs, ¹³⁷ Cs, ¹⁰³ Ru, ¹⁰⁶ Ru, ⁸⁹ Sr	2,000	1,000	200	100
2군	¹³¹ I, ⁹⁰ Sr	1,000	500	100	10
3군	²³⁵ U, ²³⁸ U	100	100	20	10
4군	²⁴¹ Am, ²³⁸ Pu, ²³⁹ Pu, ²⁴⁰ Pu, ²⁴² Pu	10	10	10	1
5군	³ H			100 kBq/L	

- 3. 농·축·수산물 오염상황 파악
 - O 합동방사선감시센터 주관 농· 축·수산물 오염상황 조사
- 4. 농・축・수산물 반출・소비 통제
 - 현장방시능방재지휘센터 결정에 따라 농·축·수산물 반출·소비 통제
 - 단반감기 핵종 오염 시 일시 저장 후 재검사
 - 허용치 초과 오염시 폐기처분

<반출 또는 소비 통제 기준>



		스	식료품과 음료품				
	방사성핵종	야채, 과일 (Bq/kg)	물, 우유 (Bq/L)	유아식품 (Bq/kg)	농·축·수산물 (Bq/kg)		
1군	¹³⁴ Cs, ¹³⁷ Cs, ¹⁰³ Ru, ¹⁰⁶ Ru, ⁸⁹ Sr	1,000	200	100	2,000		
2군	¹³¹ I, ⁹⁰ Sr	500	100	10	1,000		
3군	²³⁵ U, ²³⁸ U	100	20	10	100		
4군	²⁴¹ Am, ²³⁸ Pu, ²³⁹ Pu, ²⁴⁰ Pu, ²⁴² Pu	10	10	1	10		
5군	³ H		100 kBq/L				

수습·복구

코드번호: 47-1,5

행동요령

조치목록 : 언론대응

조치내용: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주관부서 : 대변인실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협업기관: 연합정보센터, 언론사

1. 언론 모니터링

O 실시간 뉴스보도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지

O 주요 신문보도 내용 검토

2. 오보대응

- O 유언비어, 오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즉시 해명 및 브리핑(보도자료 등 활용) 실시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를 신속하게 확인
 - 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 요청
 - 보도 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바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 특히, 재난상황에 대한 오보는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혼란을 야기함

코드번호: 47-2

행동요령

조치목록: 언론대응

조치내용: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주관부서 : 대변인실

지원부서: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협업기관: 연합정보센터, 언론사

1. 보도자료 작성

- O 배포일시, 담당자를 명확히 기입
- O 사고상황을 요약 기술하고, 대응상황 및 수습복구 계획, 시민 당부사항 등을 작성

2. 배포

- O 언론의 마감시간(조간:오후5시, 석간:오전10시)이전 자료 배포
- O 방송은 반드시 화면 제작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 O 필요시 주기적으로 배포가능하나 보도시점을 명확히 할 것

거리나드	нсле	작 성	전라남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上 工 个 五	담당자	홍보협력반 〇 〇 〇
전라남도 	201ㅇ년 ㅇ월 ㅇㅇ일 조간부터	# 3 AL	○○○○@korea.kr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00-000-0000

제목 : 원전 0호기 방사선 00비상 발령

- □ 금일(0000.0.00) 오전(오후) 00시 00분 경, OO시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 자력발전소 O호기 발전소 주요 냉각 펌프들에 전원을 공급하는 ..., 발전소 안전계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빛원자 력발전소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00:00 방사선 OO비상을 선포하였습니다.
- □ 발전소 측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 상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라남도, 영 광군, 고창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방사선비상 대책반을 설치, 운영하며 비상경계체제를 유지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 현장 방사능방재 지휘센터의 설치를 준비하는 등의 비상경계체제를 ...
- □ 향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연합정보센터를 통하여 공식으로 공표될 것입니다.